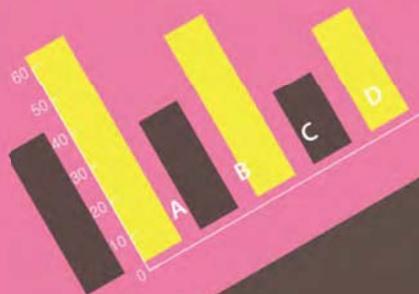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

2013. 12.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

2013. 1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

펴낸날_ 2013. 12.

찍은날_ 2013. 12.

펴낸곳_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25-86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번 (초지동 667-2) 4층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425-866 Korea
전화. 031_492_9347
전송. 031_492_9349
누리집. www.gmhr.or.kr

꾸미고 찍음_윤기획 (070.7716.832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입각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을 제도화하고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인권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국제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성숙한 다문화사회 정착과 외국인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 외국인 실태파악 및 사업장 모니터링
-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내·외국인 인권교육, 외국인 시책홍보 등 인권침해 예방
- 인권상담(출입국, 노무, 생활문제) 등 권리구제 방안 연구

연 구 진

연구책임자_ 오 경 석

공동연구원_ 홍 규 호

현 은 희

박 선 희

이 경 숙

연구요약

- 이 조사는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정주화 방지 및 가족 동반 불허에 근거한 단기 순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구성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착안하여, 그들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및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음.
-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7%는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그들의 한국 사회 통합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정기선 외 2010, 김현숙 2011). 그러나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대부분이 비정규(미등록) 체류자라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포함한 국내 외국인 관련 지원 법제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 국제 사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기본권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으며, 정부의 「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 안전, 인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통합 정도가 매우 높으나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생활 및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한국 외국인 정책의 진일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본 조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168 가정의 인권 상황 실태를 조사함. 본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국제 협약에 준거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대한민국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함. 조사 대상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10여개 국가 출신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남양주, 부천, 안산, 군포, 일산, 김포, 의정부, 포천 등 도내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음.
- 조사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3달 간 이루어졌으며, 예비조사, 본조사, 방문 조사 등 세 가지 조사 방법이 활용됨.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 조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조사 대상자를 만나, 조사 동의를 얻어내는 일인데, 아시아인권문화연대(부천),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의정부EXODUS, 안산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부천별사랑이주민센터, (사)몽골울란바타르문화진흥원(서울), 승리다문화비전센터(일산), 제일글로벌키즈센터(안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서울), (사)아시아의창(군포),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등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현장 기관들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 원래 목표인 150 가정을 넘어 168 가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설문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 고용, 의료, 자녀교육, 주거생활, 사회문화활동 등 여섯 항목에 대해 이루어짐.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전체 응답자 수는 168명으로 남성이 32.7%(55명), 여성이 64.9%(109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압도적(85명, 50.6%)이었고, 40대 미만이 148명으로 전체 표본 168명의 88.1%에 달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전반적으로 젊은 가구임이 확인됨. 체류기간은 4년~7년이 33.9%(5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년 이상도 15.5%(26명)에 달해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4.6%(75명), 대학교 졸업이 28.6%(48명), 대학원 졸업이 10.1%(17명)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83%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들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
- 응답자들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 27.4%(46명), 필리핀 23.2%(39명), 몽골 20.8%(35명), 방글라데시 8.3%(14명), 중국 6.5%(11명), 스리랑카 4.8%(8명), 인도, 토크, 우간다, 키르기즈스탄 등 8.9%(15명)로 매우 다양했음, 특정 국가 출신자들만이 가족 결합 혹은 가족 구성의 욕구가 강하다는 통설은 입증되지 않았음.
- 응답자의 혼인 상태는 기혼이 73.8%(124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음, 별거나 이혼이 7.8%(13명)로 다문화 가족의 가족 해체 비율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7.1%(12명)에 불과했고, 무응답을 제외한 74%(124명)의 응답자가 자녀가 있었음, 자녀가 1명인 응답자가 39.3%(66명), 2명인 응답자가 22.6%(38명)이었음.
- 응답자들의 현재 비자 상태는 등록이 39.3%(66명), 미등록이 54.8%(92명)로 등록상태의 근로자보다 미등록 상태의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등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 중 33.4%(27명)는 E-9 비자를, 7.4%는 H-2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기타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9 비자 소지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가족 결합 금지와 정주화 방지라는 정책 목표 자체가 고용허가제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함.
- 한국 최초 입국 시 응답자가 소지한 비자 유형은 총 18가지였으며, 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비율이 28.0%(4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2 비자 9.5%(16명), C-3 비자 5.4%(9명) 순이었음. 이것은 한국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유형과 동기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시사함. 이를테면 노동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끼리 가족을 구성한 후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이외에도 첫째 자녀는 본국에서 데려오고, 둘째 자녀부터 한국에서 출산하는 경우, 유학비자로 입국하여 추후 노동자로 생활하다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결혼이민자 중 한국인 남편과 이혼 후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한국에서 재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등이 가능함.

- 응답자의 입국 경로를 살펴보면, 고용허가제나 산업연수제를 통한 입국이 33.3%(56명)로 브로커를 통한 관광 비자를 소지한 입국(15.5%, 26명)을 비롯한 다른 유형의 입국을 압도하는 비중임. 이 결과 역시 고용허가제의 정책 목표와는 달리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내부에서 가족 형성과 정주화 경향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배우자의 입국 경로도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를 통한 합법적인 입국이 22.0%(37명)로 브로커를 통해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경우(11.3%, 19명)를 압도함.
- 응답자 자녀의 경우 응답자의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비율 보다는 한국에서 출생한 비율이 58.3%(77명)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아시아의 창 2012). 이것은 가족 ‘재’ 결합 금지만으로 한국의 외국인 정책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족 형성’의 경향성을 저지할 수 없음을 뜻하는 지표로 주목을 요함.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고용 실태

- 응답자들 대부분(64.9%, 109명)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0.7%(18명)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미등록자의 경우 공장노동자의 비율은 71.7%로 등록자의 56.1%를 압도함. 종사 업종 분포에서 미등록자 대부분이 피고용자로써 근로를 행하고 있는데 반해, 등록자의 경우는 공장노동자가 다수이긴 하나 장사(4.5%)와 기타(16.7%, 자영업자로 추정됨)로 답한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직업선택의 폭이 미등록 체류자에 비해 비교적 폭 넓다는 사실이 확인됨.
- 평균 수입 관련 남편의 경우 한 달 평균 수입은 153만원으로 나타났고, 부인은 114만원으로 나타남. 남편과 부인의 합산 평균 수입은 267만원으로 나타남. 2013년 한국인의 평균 임금은 3,346,000원(20.8일 근무)으로, 2012년 가구 평균 소득이 408만원으로 보고된 바 있다는 점에서(통계청 2013, 2012), 외국인근로자 가족 개인 및 가구 소득이 한국인 개인 및 일반 가정 소득의 50% 내지 60% 수준에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줌.
- 최근 1년간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6.2%(44명)는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72.0%(121명)는 임금체불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임금체불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이 5.2%로 조사된 바 있다는 점(정기선 외 2010)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26.2%는 매우 높은 수치임.
- 미등록 체류 응답자들이 등록 체류 응답자들에 비해서 임금 체불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미등록 31.5%, 등록 18.2%). 미등록이라는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이 임금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 및 불평등과 연동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체불 임금을 해결하는데 걸린 평균 기간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무려 38.6%(17명)의 응답자들이 체불 임금을 끝내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는 점임.
- 응답자의 대부분인 83.9%(141명)는 거주 지역 시군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훈련 참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련 기능과 기술 습득 욕구가 매우 높은 데 반해 관련 서비스는 아주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함.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의료 실태

-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6%(61명)에 그침.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들의 63% 가량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평가한다는 점(김광기 외 2010)에서 이는 매우 낮은 수치임.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시사함.
- 응답자들이 느끼는 건강상태는 체류신분에 따라 차이가 큼. 등록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45.4%(30명)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등록 응답자의 경우 29.3%(27명)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함. 체류의 안정성 여부가 응답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 응답자의 41.7%(70명)만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56.0%(94명)는 국민건강보험에 ‘없다’라고 응답함. 체류 자격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 등록 체류자의 36.4%(24명)만이 건강보험 미가입자였는데 반해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는 무려 71.7%(66명)가 미가입자였음. 이것은 미등록 체류 응답자 본인 또는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리라는 것을 의미함. 전체 응답자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총 의료비용은 평균 174만원으로 나타남.
- 병원비가 없을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국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31.2%(53명)로 가장 높았으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1.8%(37명)로 높게 나타남.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참으면서 생활’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응답자 본인 또는 가족이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 71.4%(120명)로 매우 높았으며,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6.8%(45명)로 나타남.
- 시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접종 서비스를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1%(101명)가 ‘없다’라고 응답했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8.7%(65명)였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받아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3.8%(124명)가 ‘없다’라고 응답했고, 23.8%(40명)만이 ‘있다’라고 응답함.
- 응급 상황 시 119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50.0%(84명)가 이용할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했고, 47.6%(80명)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 체계를 이용할 의사가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시켜줌.

- 등록 체류자의 경우 54.5%(36명)가 119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는 43.5%(40명)만이 이용 의사를 밝힘. 체류 자격 여부가 긴급 의료 서비스 이용 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 119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불법체류신분(50.5%, 50명), 비용의 문제(16.2%, 16명), 소통의 문제(12.1%, 12명) 등의 순이었음.
- 응답자 가정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의료비 할인(34.9%, 67명), 건강검진(30.7%, 59명), 건강에 대한 교육 상담(17.2%, 33명) 순으로 확인됨.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자녀 교육

- 응답자 자녀의 40.5%(68명)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16.1%(27명)는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41.2%(14명)로 압도적이었고, ‘불법 체류신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8%(4명)로 두 번째 이유로 선택됨.
- 응답자의 압도적인 다수인 80.2%(73명)는 시군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불과 19.8%(18명)만이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군에서 제공하는 자녀 돌봄 서비스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해서 무려 72.8%(67명)의 응답자들이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불과 27.2%(25명)만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64.0%(48명)는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됨. 주목할 점은 무려 36.0%(27명)가 공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임. 자녀들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재학 연령대이며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의무 교육 기관인 중학교까지 내국인과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며, 외국인 근로자 가족 자녀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지표임.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기타’라는 선택지를 제외하는 경우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14.0%, 4명)와 불법체류 신분의 문제(11.1%, 3명)로 압축됨.
- 응답자의 72.7%(48명)는 자녀 입학 시 교육청이나 주민센터로부터 입학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도 71.4%(50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려 21.7%(15명)의 응답자가 자녀를 입학 시킬 때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임. 이것은 각급 지자체에 ‘다문화 거점 학교’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많은 학교에 ‘다문화 특별 학급’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임. 제도와 현실의 심각한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응답자의 60.7%(37명)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다문화 전담’ 교사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다문화 전담 교사가 있는 경우에도 57.9%(22명)는 교사들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도 62.1%(36명)에 해당하는 대다수 응답자가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학습지원 멘토링’ 서비스 역시 78.9%(45명)의 응답자가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어린이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녀는 24.5%(24명)에 불과했음.
- 응답자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내용으로 학교 과목 과외지도 25.7%(29명), 한국어 교육 23.0%(26명), 교육비·급식비 등 경제적 지원 18.6%(21명), 심리·상담지원 9.7%(11명), 진학지도 9.7%(11명) 등을 선택함.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주거생활 실태

- 응답자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평균 ‘129만원’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73.8%(124명)는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린 경험’이 있었으며, 돈을 빌린 대상은 모국 친구가 83.6%(117명)로 압도적이었음.
- 생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분야는 식료품비(30%, 115명), 각종 관리비(25.1%, 96명), 의료비(18.8%, 72명), 자녀교육비(14.1%, 54명) 순으로 조사됨. 생활비의 대부분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비되고 있음이 확인됨.
- 응답자의 주거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고시원(42.0%, 42명), 컨테이너(12.5%, 21명), 지하나 반지하(12.5%, 21명) 등 취약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체류 자격별로 주거 형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확인됨. 등록 체류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거 형태가 주로 지하나 반지하(16.7%, 11명), 단독주택(16.7%, 11명) 등이었는데,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는 고시원(34.8%, 32명)이 압도적이었으며 컨테이너(14.1%, 13명)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
-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가 67.9%(114명)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세 13.1%(22명), 무상 임대 8.3%(14명) 순이었음. 월세 평균 비용은 ‘29만원’으로 나타남.
- 체류 자격별 점유 형태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미등록 체류자의 월세율이 등록 체류자보다 높았으며(등록 60.6%, 미등록 73.9%), 등록 체류자의 전세율이 미등록 체류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등록 24.2%, 미등록 6.5%).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보장을 위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강제출국을 당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으로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형태의 거주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응답자가 거주하는데 겪는 어려움으로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문제(21.3%, 51명)가 가장 심각했으며, 쥐·바퀴벌레 문제(18.3%, 44명), 햅볕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17.5%, 42명), 온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11.7%, 28명) 등으로 주거의 질과 안정성 자체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확인됨.
- 생활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다문화가족과 비교해서 시군으로부터 받는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응답자의 78.0%(131명)는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시군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률 서비스 역시 85.7%(144명)의 응답자가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76.8%(129명)는 시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이나 원격 교육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한국어 교육 참여 경험도 매우 낮아서 64.3%(108명)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변함. 교육 참여 여부는 체류 자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냄. 등록 체류자의 39.4%(26명)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는데 반해,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는 22.8%(21명)만이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에서 제공하는 통·번역 서비스 역시 단지 13.1%(22명)만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응답자의 무려 78%에 해당하는 131명은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것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통·번역 센터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생활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언어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사회문화활동 실태

- 응답자의 33.4%(58명)는 자신들이 생활하는 동네의 구성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동네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하게 부정한 응답자는 8.9%(15명)에 그침. 대부분의 응답자(36.3%, 61명)는 중립적인 입장을 선택함.
- 동네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감은 미등록 체류자가 등록 체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등록 응답자의 35.9%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비해 등록 응답자의 경우는 28.8%에 그침.
- 응답자 대부분은 공식적인 지역 사회 문화 활동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됨. 69.6%(117명)는 시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으며, 72.6%(122명)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 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없었고, 55.4%(93명)는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본 경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시사점과 정책 제언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일반적인 특징〉

- 한국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단기 순환 및 정주화 방지(가족 결합 금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체류의 장기화 및 가족 형성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특정 국가 출신자들 사이에서 불법적인 혹은 제도외적인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을 것이라는 통념은 지지되기 어렵다는 점이 밝혀짐.
- 외국인 근로자 가족 형성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의 내부에서 다양한 유형과 방식, 경로를 통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향후 빠른 속도의 규모 증대가 전망됨.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고용, 의료, 자녀 양육, 주거 생활, 사회문화 활동 등에 있어서 제도적, 사회적, 심리적 제 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
- 특히 비정규(미등록) 체류자 가족 자녀들의 경우, 한국에서 나고 자란 ‘실질적인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임.
-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주객관적인 사회통합의 정도가 매우 높은 외국인 집단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현행과 같이 공적인 정책 지령에서 거의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외국인 정책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이런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정확한 생활 및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공적인 지원 체계 내부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모색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과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최초로 공론화하였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의미가 찾아질 수 있음.

〈고용〉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문제는 고용허가제의 정책 목표 자체가 현실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임. 따라서 현실과 괴리된 고용허가제의 기조 자체를 재조정할 수 있어야 함.
- 일반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체불 임금 보장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체류 자격에 구분 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직업 훈련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함.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장기 체류자이자 한국 문화에 숙달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숙련 직종에 근무함으로써 취업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함. 고용노동부 차원의 취업 교육 문호를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게 개방할 수 있어야 함.
- 미등록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불법 직업 알선 및 수수료 편취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에서 제공하는 직업소개(알선)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어야 함.

〈의료〉

- 응급 의료를 포함해 공적인 의료 지원 대상이 외국인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함.
-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지원 범위를 확대시켜 외국인근로자 가족들을 조례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한국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이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됨. 그들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어야 함.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하며,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119 서비스 등 긴급 서비스 종사자들이 통보 의무 유예 대상자라는 점, 모든 12세 이하 아동들에게는 미등록, 등록 여부를 묻지 않고 무료 예방 접종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 등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어야 함.
- 언어소통으로 인한 불편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서 모국어 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이 중요함. 더불어 공공 의료 서비스와 민간무료진료 서비스 관련기관 간의 연계망 구축이 요청됨.

〈자녀 양육〉

-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보육 지원 필요. 공공 보육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요청됨.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보육 조례’의 대상 범위를 외국인 근로자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외국인 영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본국에서 영유아기에 한국으로 중도입국한 경우는 물론 한국에서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부모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따라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할 수 있음.
- 외국인 아동의 취학절차 안내 경로 발굴과 확대가 필요함. 외국인 아동의 공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아동의 취학절차와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경로를 발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보의 부족이나 신분 노출 위협 등으로 인해 시기를 놓쳐 미등록이나 무국적 상태에 빠지는 외국인 아동들이 존재함.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등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주거생활〉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함.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모색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주거 취약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준비중인 '2020 경기도 주택 종합 계획'에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정책을 포함시키는 방안, 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안에 외국인 주거 지원 항목을 보완하는 방안 등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더불어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주택조례’의 대상 범위를 외국인 근로자 가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거비 지원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포함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비정규 체류자도 여권 번호 등 다른 방식으로 전세 계약이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강제 퇴거시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

〈사회문화활동〉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 사회 문화 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은 ‘경기도 문화예술 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등의 대상 범위를 외국인 근로자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임.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문화 시설에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함. 정보의 공유와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공공 시설 및 지역 사회 공론장에서 모국어 지원 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함.

차례

I. 조사의 개요

- | | |
|-----|----------------|
| 025 | 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
| 027 | 2. 조사 대상과 내용 |
| 027 | 1) 조사 대상 |
| 029 | 2) 조사 내용 |
| 031 | 3. 조사 방법 |
| 035 | 4. 조사 추진 일정 |
| 036 | 5. 조사 결과 활용 방안 |

II. 외국인 근로자 가족 관련 국내외 규범 및 선행연구

- | | |
|-----|-------------------------------|
| 039 | 1. 외국인 근로자 가족 관련 국제 규범 |
| 042 | 2. 외국인 근로자 가족 관련 경기도 자치법규(조례) |
| 044 | 3. 선행 연구 |

III. 조사 결과

- | | |
|-----|-------------------|
| 049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 056 | 2. 고용 실태 |
| 061 | 3. 의료 실태 |
| 068 | 4. 자녀양육 실태 |
| 074 | 5. 주거생활 실태 |
| 081 | 6. 사회문화활동 실태 |

IV. 시사점과 정책 제언

- | | |
|-----|-----------------------|
| 087 | 1.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일반적 특징 |
| 088 | 2. 고용 |
| 089 | 3. 의료 |
| 091 | 4. 자녀양육 |
| 092 | 5. 주거생활 |
| 093 | 6. 사회문화활동 |

095 참고 문헌

097 설문지

- 026 〈I-1〉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027 〈I-2〉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상
028 〈I-3〉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
028 〈I-4〉 응답자의 체류기간 분포
030 〈I-5〉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030 〈I-6〉 설문지 구성을 위한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
031 〈I-7〉 설문 조사 수행지역과 조사 대상
033 〈I-8〉 조사 보조원 지침서
034 〈I-9〉 조사 대상 섭외 협력 단체
035 〈I-10〉 조사 추진 일정
039 〈II-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상 보장되는 권리 목록
042 〈II-2〉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활용 가능한 경기도 자치법규
049 〈III-1〉 성별 분포
049 〈III-2〉 학력 분포
050 〈III-3〉 국적별 분포
050 〈III-4〉 혼인 상태
051 〈III-5〉 자녀 수
051 〈III-6〉 체류 자격
052 〈III-7〉 현재 비자
053 〈III-8〉 한국 최초 입국 시 비자 유형
054 〈III-9〉 응답자의 입국 경로
054 〈III-10〉 배우자의 입국 경로
054 〈III-11〉 자녀 입국 경로
056 〈III-12〉 종사 업종(전체)
056 〈III-13〉 종사 업종(등록)
057 〈III-14〉 종사 업종(미등록)
057 〈III-15〉 응답자와 배우자의 한 달 평균 수입
057 〈III-16〉 임금체불 경험(전체)
058 〈III-17〉 임금체불 경험(등록)
058 〈III-18〉 임금체불 경험(미등록)
058 〈III-19〉 임금체불 횟수
059 〈III-20〉 임금체불 해결 평균 기간
059 〈III-21〉 직업 교육 경험

표 차례

- | | |
|-----|----------------------------------|
| 060 | 〈Ⅲ-22〉 직업 소개 경험 |
| 061 | 〈Ⅲ-23〉 응답자가 느끼는 건강 상태(전체) |
| 061 | 〈Ⅲ-24〉 응답자가 느끼는 건강 상태(등록) |
| 062 | 〈Ⅲ-25〉 응답자가 느끼는 건강 상태(미등록) |
| 062 | 〈Ⅲ-26〉 건강보험 보유 여부(전체) |
| 062 | 〈Ⅲ-27〉 건강보험 보유 여부(등록) |
| 063 | 〈Ⅲ-28〉 건강보험 보유 여부(미등록) |
| 063 | 〈Ⅲ-29〉 병원비가 없을 때 도움 준 사람 |
| 064 | 〈Ⅲ-30〉 건강검진서비스 이용 경험 |
| 064 | 〈Ⅲ-31〉 무료접종서비스 이용 경험 |
| 064 | 〈Ⅲ-32〉 건강상담서비스 이용 경험 |
| 065 | 〈Ⅲ-33〉 응급상황 시 119 서비스 이용 의사(등록) |
| 065 | 〈Ⅲ-34〉 응급상황 시 119 서비스 이용 의사(미등록) |
| 066 | 〈Ⅲ-35〉 119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는 이유 |
| 067 | 〈Ⅲ-36〉 필요 의료 서비스 |
| 068 | 〈Ⅲ-37〉 어린이집에 못 다니는 이유 |
| 069 | 〈Ⅲ-38〉 시군의 보육료 지원 여부 |
| 069 | 〈Ⅲ-39〉 시군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여부 |
| 069 | 〈Ⅲ-40〉 자녀의 학교 재적 여부 |
| 070 | 〈Ⅲ-41〉 자녀가 학교를 안 다니는 이유 |
| 070 | 〈Ⅲ-42〉 자녀 입학 시 안내 여부 |
| 070 | 〈Ⅲ-43〉 자녀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 이용 여부 |
| 071 | 〈Ⅲ-44〉 자녀 입학 시 거부 경험 유무 |
| 071 | 〈Ⅲ-45〉 자녀 재학 학교 다문화 전담 교사 유무 |
| 071 | 〈Ⅲ-46〉 다문화 전담 교사 도움 여부 |
| 071 | 〈Ⅲ-47〉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
| 072 | 〈Ⅲ-48〉 학습지원 멘토링 서비스 이용 여부 |
| 072 | 〈Ⅲ-49〉 어린이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참여 경험 |
| 073 | 〈Ⅲ-50〉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
| 074 | 〈Ⅲ-51〉 돈을 빌려준 사람 |
| 074 | 〈Ⅲ-52〉 생활비 주요 지출 항목 |
| 075 | 〈Ⅲ-53〉 주거 형태(전체) |
| 076 | 〈Ⅲ-54〉 주거 형태(등록) |

- | | |
|-----|-----------------------------------|
| 076 | 〈Ⅲ-55〉 주거 형태(미등록) |
| 077 | 〈Ⅲ-56〉 주거지 점유 형태(전체) |
| 077 | 〈Ⅲ-57〉 주거지 점유 형태(등록) |
| 077 | 〈Ⅲ-58〉 주거지 점유 형태(미등록) |
| 078 | 〈Ⅲ-59〉 주거지의 어려움 |
| 078 | 〈Ⅲ-60〉 사회복지사 방문 경험 |
| 078 | 〈Ⅲ-61〉 생활·법률 서비스 이용 경험 |
| 079 | 〈Ⅲ-62〉 시군제공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서비스 이용 경험 |
| 079 | 〈Ⅲ-63〉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전체) |
| 079 | 〈Ⅲ-64〉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등록) |
| 080 | 〈Ⅲ-65〉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미등록) |
| 080 | 〈Ⅲ-66〉 통·번역 서비스 이용 경험 |
| 081 | 〈Ⅲ-67〉 동네 구성원으로 느끼는 정도(전체) |
| 082 | 〈Ⅲ-68〉 동네 구성원으로 느끼는 정도(등록) |
| 082 | 〈Ⅲ-69〉 동네 구성원으로 느끼는 정도(미등록) |
| 082 | 〈Ⅲ-70〉 시군 주최 행사나 축제 참여 경험 |
| 083 | 〈Ⅲ-71〉 주민센터 제공 문화체육활동 참여 여부 |
| 083 | 〈Ⅲ-72〉 세계인의 날 행사 참여 경험 |

그림 차례

- | | |
|-----|----------------------------|
| 049 | 〈Ⅲ-1〉 학력 분포 |
| 051 | 〈Ⅲ-2〉 자녀 수 |
| 052 | 〈Ⅲ-3〉 체류 자격 |
| 065 | 〈Ⅲ-4〉 응급상황 시 119 서비스 이용 의사 |
| 066 | 〈Ⅲ-5〉 필요 의료 서비스 |
| 068 | 〈Ⅲ-6〉 어린이집에 못 다니는 이유 |
| 072 | 〈Ⅲ-7〉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
| 075 | 〈Ⅲ-8〉 주거 형태 |
| 081 | 〈Ⅲ-9〉 동네 구성원으로 느끼는 정도 |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 _ I

조사의 개요

1. 조사 목적과 필요성

- 이 조사는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총체적인 인권 상황 및 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도적,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외국 국적자끼리 가족을 구성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규모는 상당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정주화 및 가족 동반 불허 기조에도 불구하고 제도 내부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경로는 매우 다변화되고 있음.
-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단으로 하는 조사 표본의 7%가 배우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는 점에서 대략적인 규모의 추계가 가능함(정기선외 2010).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말 비전문취업자(E-9)의 규모는 230,237명에 달함(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2년 12월). 그들의 7%는 16,116명임. 일상적인 관계형성(rapport)에 기반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지원하는 현장 단위들의 중언에 따르면 이들의 규모는 공식적인 추계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견됨.
-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다문화 가족 중심으로 편향되게 진행되고 있어 정책의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어 온 바 있음(사회통합위원회 2012, 양기호 외 2011, 오경석 외 2011)
- 정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해 수행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동법 제10조 2항). 동법(제12조)에 근거해 현재 전국의 200여 개 지자체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은 2013년 현재 제2차 계획이 시행중임.(표 I -1)
- 같은 '가족' 단위이며, 결혼이민자 못지않게 지역 사회 통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현숙 2011),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다문화 가족과 달리 일체의 공식적인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결혼이민자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는 국적자가 포함되

〈표 I -1〉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17)
비전	열린 다문화 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목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추진기관	11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
미래공현		국격에 맞는 국제사회

어 있지 않으며, 비정규(미등록) 체류자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포함하는 국내 외국인 관련 지원 법제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유로 추론됨.

- 국제 사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기본적인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일체의 지원 법제는 물론이고 인권 담론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작은 권리’를 갖는 것을 넘어 “권리를 가질 권리에서 조차 배제되는 이주민”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합법적이며 공식적인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정확한 규모와 생활 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 등에 주목한 연구들은 존재하나 본 연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표본으로 그들의 인권 및 생활 실태 전반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연구는 전무함(이혜원 외 2010, 군포 아시아의 창 외 2012).
- 본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고용, 의료, 교육, 주거, 사회 문화 등 인권의 전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포함한 기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따라서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통합 정도가 매우 높으나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생활 및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모색하는 일은 외국인 정책의 내적 모순과 국제 사회의 외국인 인권 규범과 국내 현실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임.

2. 조사 대상과 내용

1) 조사 대상

- 본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국제 협약에 준거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대한민국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함. 이런 면에서 본 조사의 조사 대상은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허가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을 뜻하는 다문화 가족과 구분됨.
- 설계 단계에서 목표로 한 조사 대상은 150가정이었으나 본 조사에서 168가정을 조사함으로써 조사 대상을 초과 달성함. 조사 대상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10여개 국가 출신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남양주, 부천, 안산, 군포, 일산, 김포, 의정부, 포천 등 도내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표 I -2)

〈표 I -2〉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 조사 대상

지역 \ 국적	필리핀	중국	몽골	베트남	방글라 데시	스리랑카	콩고	나이지 리아	기타	계
남양주	36				4					40
부천			6	20						26
안산		11				4	1	5		21
김포				11	10					21
포천			1			3			1	5
일산			23							23
구리			3							3
의정부	3			4				2	5	14
군포			2	2						4
화성				9		1			1	11
계	39	11	35	46	14	8	1	7	7	168

* 기타 국가: 인도, 토고, 우간다, 키르기즈스탄 등

- 전체 응답자 수 168명 가운데 남성이 32.7%(55명), 여성이 64.9%(109명)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압도적이었고, 40대 미만이 전체의 88.1%에 달해 전체적으로 젊은 가구임이 확인됨. (표 I -3)
- 응답자의 체류기간은 4년~7년이 33.9%(5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년 이상도 15.5%(26명)에 달해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 -4)

〈표 I -3〉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

구분	빈도(명)	비율(%)
20대	28	16.7
30대	85	50.6
40대	35	20.8
50대	5	3.0
무응답	15	8.9
계	168	100

〈표 I -4〉 응답자의 체류기간 분포

구분	빈도(명)	비율(%)
1~3년	28	16.7
4~7년	57	33.9
8~11년	18	10.7
12년이상	26	15.5
무응답	39	23.2
계	168	100.0

2) 조사 내용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위해 본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제외하고 ‘고용, 의료, 교육, 주거 생활, 사회문화’ 등의 다섯 가지 조사 범주를 채택함.
- 인권의 분야는 크게 생명.자유.신체적 안전의 권리, 사법적 권리, 자유권, 경제적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가족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유권,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의 범위로 한정함(심영희 외 2010).
- 이 중에서도 개별 인간 단위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의식주와 관련이 있는 고용, 의료, 주거 생활 관련 분야와 안정적인 사회 생활과 다른 사람과의 교류의 필수 요소인 교육 및 사회문화의 참여를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인권 상황 실태 파악 조사의 범주로 설정함.
- 고용 실태 관련해서는 현재 직장, 가족의 총수입, 임금체불 여부, 시군제공 직업 교육 훈련 참여 여부, 시군 제공 직업 알선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이 조사됨. 의료 실태 관련해서는 본인의 건강상태, 2012년도 총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유무, 병원에 갈 돈이 없을 때 도움 받은 대상, 시군 제공 무료 접종 서비스 이용 여부, 시군 제공 건강 상담서비스 이용 여부, 응급상황 경험 여부, 응급 상황시 119 이용 의사 여부, 가장 필요한 의료서비스 내역 등이 조사됨.
- 자녀 교육 실태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등원 여부, 시군 보육료 수급 여부, 자녀돌보미 서비스 이용 여부, 학교 재학 여부, 입학 안내 수령 여부, 자녀 한국어 서비스 이용 여부, 자녀 입학시 거부 경험 여부, 다문화 전담 교사 유무,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여부, 학습멘토링 이용 여부, 시군 제공 어린이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참여여부,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내역 등이 조사됨.
- 주거 생활 실태 관련해서는 한 달 생활비, 돈이 없어 빌린 경험 유무, 주요 생활비 지출항목, 거주형태, 주택 점유 형태, 월세의 경우 지출하는 비용, 주거지의 어려운 점, 사회복지사 방문 여부, 시군 제공 생활·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방문서비스나 원격교육 이용 여부, 통번역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이 조사됨. 사회문화 활동 관련해서는 동네의 구성원 인지정도, 주민센터 제공 문화·체육 활동 참여 여부,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참여 여부 등이 조사됨. (표 I -5)
- 외국인 근로자 인권 상황 실태 파악을 위해 타당하며서도 가능한 한 쉽고 간명한 내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3차례의 내부 워크샵과 3차례의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침.(표 I -6)
- 설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답자의 설문지 내용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설문지를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필리핀어(파갈로그어) 등 6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사용함.

〈표 I -5〉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상황 실태 조사 설문지 구성

구분	문항 내용
일반적인 배경	출생년도, 성별, 학력, 최초 입국시기 및 비자형태, 국적, 결혼상태, 자녀수, 현재 비자 상태, 본인 및 가족 한국 입국 경로
고용 실태	현재 직장, 가족의 총수입, 임금체불 여부, 시군제공 직업 교육 훈련 서비스 이용 여부, 시군 제공 직업 알선 서비스 이용 여부
의료 실태	본인의 건강상태, 2012년도 총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유무, 병원에 갈 돈이 없을 때 도움 받은 대상, 시군 제공 무료 접종 서비스 이용 여부, 시군 제공 건강 상담 서비스 이용 여부, 응급상황 경험 유무, 응급 상황시 119 사용의사 여부, 가장 필요한 의료서비스 내역
자녀교육 실태	어린이집 등원 여부, 시군 보육료 지원 여부, 자녀돌보미 서비스 이용 여부, 학교 등교 여부, 입학 안내 수령 여부, 자녀 한국어 서비스 이용 여부, 입학시 거부 경험 유무, 다문화 전담 교사 유무,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여부, 학습멘토링 참여 여부, 시군 제공 어린이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여부,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서비스 내역
주거생활 실태	한 달 생활비, 돈이 없어 빌린 경험 유무, 주요 생활비 지출항목, 거주형태, 주거지 점유 형태, 월세의 경우 주거비용, 거주지의 어려운 점, 사회복지사 방문 여부, 시군 제공 생활·법률 서비스 이용 여부, 방문서비스나 원격교육 이용 여부, 통번역 서비스 이용 여부
사회문화활동 실태	동네의 구성원 인지여부, 시군 제공 문화체육 활동 참여 여부,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참여 여부

〈표 I -6〉 설문지 구성을 위한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

워크숍	1차 (3월28일)	① 연구목적 및 내용 공유 및 논의 ② 문헌 조사 결과 공유 ③ 설문지 1차 내용 공유 및 설문 항목 및 내용 점검
	2차 (4월9일)	① 설문지 1차 수정안을 이용한 설문 항목 및 내용 2차 점검 ② 관련분야 현장 활동가 및 교수 자문 방식 논의
	3차 (5월20일)	① 현장 활동가 및 학자를 통한 자문 내용을 반영한 3차 설문지 내용 점검 ② 3차 설문지 최종 점검을 위한 당사자 대상 '예비조사' 대상 및 진행 방식 확정
전문가 자문	1차 (4월11일) (부천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원대표)	① 내부 워크숍을 거쳐 정리된 설문 내용에 대한 타당도 검증 작업 진행 ② 주거 생활 관련 누락 항목 및 보충 내용 자문 ③ 자문 후 1차 설문지 수정본 완성
	2차 (4월17일)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사무국장)	① 1차 전문가 자문 내용 반영 수정본에 대한 2차 전문가 자문 진행 ② 자녀교육 분야에서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미취학 상황임을 고려하여 설문 구성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킴 ③ 자문 후 2차 설문지 수정본 완성
	3차 (4월18일)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	① 2차례의 현장 활동가 의견이 반영된 설문지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 ② 사회조사방법론 및 사회통계 전문가 교수의 자문을 통해 설문지 형식, 문항, 문항 배치 수정

3. 조사 방법

- 조사의 타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예비 조사와 본조사, 방문 조사의 세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함. 본조사 실시에 앞서 설문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비 조사를 수행함. 본 조사와 더불어 본 조사의 내용을 보다 현장감 있게 해석하기 위하여 방문 조사를 병행함.
- 안산에 있는 제일글로벌키즈센터 중국인 학부모 4인을 대상으로 5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에 걸쳐 설문 내용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함. 예비 조사를 통해 설문 내용의 질문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 응답자들이 답하기 힘들어 하는 질문들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였음.
- 예비 조사를 통해 주거생활 관련 분야의 주거 형태 질문 중 ‘고시원’이 추가되어야 함을 파악함. 자녀 교육과 관련한 문항의 경우 응답자들이 미취학 아동과 학령기 아동에 관한 질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삽입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함.
- 방문조사는 남양주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따루(7세, 가명) 가정과 필리핀 국적의 신이(5세, 가명) 가정에서 6월 16일에 진행됨.

〈표 I -7〉 설문 조사 수행지역과 조사 대상

번호	지역	조사 대상
1	남양주	필리핀 36명, 방글라데시 4명
2	부천	몽골 6명, 베트남 20명
3	안산	중국 11명, 스리랑카 4명, 콩고, 1명, 나이지리아 5명
4	김포	베트남 11명, 방글라데시 10명
5	포천	몽골 1명, 스리랑카 3명, 기타 1명
6	일산	몽골 23명
7	구리	몽골 3명
8	의정부	필리핀 3명, 베트남 4명, 나이지리아 2명, 기타 5명
9	군포	몽골 2명, 베트남 2명
10	화성	베트남 9명, 스리랑카 1명, 나이지리아 1명

- 따루의 부모님은 출입국 단속에 의해 체포되어 아버지는 강제 출국 당하고 어머니는 일시보호해제 중인 상태였음. 조사 결과 체류 자격과 자녀 교육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어려운 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함.
- 신이 가족의 경우 여러 다른 가정들이 함께 거주하는 쪽방 형태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음. 신이네 집 1층에는 신이 부모님이 일하는 공장이 있었고,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를 만들어 숙소로 사용함으로써 일과 주거가 동일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음. 신이 가정 또한 따루 가정과 비슷하게 체류 자격과 자녀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함.
- 본조사에 해당하는 설문 조사는 5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두 달 반에 걸쳐 진행함. 설문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과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표 I -7)
- 설문 조사는 훈련된 조사보조원들이 함께 수행함. 조사의 질을 높이고자 조사보조원들(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전 교육을 통해 설문 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주지시킴. <표 I -8>
- 공식적인 정책 및 서비스 공간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비정규 체류자인 관계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신분 노출에 아주 민감함. 따라서 조사 대상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임. 우리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게 인도주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조사 대상과 접촉할 수 있었음.



방문조사: 따루 가정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문조사

이들 현장 지원단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조사는 불가능했을 것임. 이 보고서를 빌어 다시 한 번 본 조사를 도와주신 현장의 협력 단체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함.(표 I -9)

〈표 I -8〉 조사보조원 지침서

1. 설문조사원은 설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문지를 충분히 읽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설문조사를 가실 때에는 한국어 설문지와 응답자의 모국어로 된 설문지를 넉넉히 준비해 가십시오. 펜과 응답자에게 줄 사은품도 넉넉히 가지고 가십시오.
3. 가급적 설문조사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2명 이상에게 동시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고르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4.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응답자에게 설문지 첫 장에 있는 글을 꼭 읽어주십시오. 이 설문을 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설문응답자의 신분은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또,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5. 설문조사를 할 때 반드시 응답자 옆에서 답변하는 것을 지켜봐 주십시오.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 못하거나 잘못 답할 때(조건부 질문이나 표)는 옆에서 설명해 주시고 답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앞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일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로 응답자들에게 설문지를 주고 알아서 작성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6. 설문이 다 끝난 뒤에는 응답자가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답했는지, 답변에 일관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7. 설문 내용 작성 중 한국의 숫자 단위를 잘 모르는 경우 옆에서 설명해 직접 작성해 주시고, 이도 어렵다면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8. 기타 항목에 한국어로 응답해야 해야 하는데 최대한 본인이 작성하게 유도해 주시고, 한국어 표기가 어렵다면 조사원께서 듣고 한글로 대신 표시해 주십시오..
9.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답변에 일관성이 없는 설문지는 무효 설문지로 처리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설문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표 I -9〉 조사 대상 섭외 협력 단체

번호	협력 단체명	번호	협력 단체명
1	아시아인권문화연대(부천)	8	부천별사랑이주민센터
2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9	(사)몽골울란바타르문화진흥원(서울)
3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10	승리다문화비전센터(일산)
4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11	제일글로벌키즈센터(안산)
5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12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서울)
6	의정부EXODUS	13	(사)아시아의창(군포)
7	안산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14	포천 나눔의집 이주민 지원센터

4. 조사 추진 일정

- 이 조사의 조사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다.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I -10)

〈표 I -10〉 조사 추진 일정

(조사기간: 2013. 03.~2013. 12.)

월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계획 수립 및 조사 설계, 추진 일정 확정										
설문지작성 위한 내부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										
예비조사, 면접자, 설문대상자, 조사 기관 섭외										
설문지 확정, 본조사										
중간보고서 작성										
본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발간										

5. 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

- 본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논의를 공론화하고 활성화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간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에 초점을 맞춘 조사들은 수행된 바 있으나(이혜원 외 2010, 아시아의 창 외 2012) 가족 단위 전체의 생활 및 인권 실태 전반을 다룬 연구는 본 조사가 최초임.
- 본 조사가 제안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사회 통합 및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은 ‘가족’단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외국인 지원 정책 기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견지하면서도 정책 대상의 포괄성 및 외연의 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외국인 지원 정책이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계기의 마련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임.
- 우리 센터는 본 조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 개최, 심화된 보완 조사 및 공동 조사 기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후속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임.
- 2013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와 공동 주최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 심포지엄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임. 이 심포지엄을 통해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주거 환경 법 개선 방안’,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의료지원 법 개선 방안’,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법 개선 방안’, ‘지자체 외국인 근로자 가족 지역사회통합정책의 과제’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예정임.
- 이런 토론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의 위상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 수준의 다문화 인권친화적인 세계 도시로 진일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_Ⅱ

외국인 근로자 가족 관련 국내외 규범 및 선행 연구

1. 외국인 근로자 가족 관련 국제 규범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권리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규범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임. 이 협약은 1990년 UN 총회에서 채택됨. 한국은 현재 이 협약의 비준국이 아니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협약의 상징성과 중요성은 매우 크며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준거 규범이라고 할 수 있음.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누려야 하는 권리와 지위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됨. 협약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 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명문화함. (협약 제7조).
- 협약 제3부에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목록이 제시되고 있음. (표 II-1)
- 본 조사의 조사 항목인, 고용, 의료, 자녀교육, 주거생활, 사회문화활동과 관련하여 협약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상 보장되는 권리 목록

법주	내용	
자유권적 기본권	인신의 자유	- 생명권(제9조) - 고문,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처우와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제10조) - 노예상태 및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제11조)
	정신의 자유	- 사상 및 양심, 표현의 자유(제12조~제13조)
	사생활의 자유	- 사생활의 자유(제14조)
	경제생활의 자유	- 재산권 규정(제15조)
사회권적 기본권	- 보수 및 노동조건에 대해 취업국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제25조) - 노동조합 및 기타 단체 가입, 그 원조 및 지원을 구할 권리(제26조) - 사회보장과 응급진료에 대한 권리(제27조~제28조)	
추가적 권리	- 문화적 독자성의 존중 및 그 출신지국과의 문화적 결합의 유지에 대한 권리(제31조) - 소득과 저축, 개인적 재산과 소지품을 국외로 이전시킬 원리(제32조) - 입국조건, 해당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른 그의 권리와 의미에 대하여 통지받을 권리(제33조)	

- 협약 제25조는 보수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국 국민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됨.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제25조

1. 이주노동자는 보수 및 다음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 국민보다도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 (a) 다른 근무조건, 즉 초과근무, 노동시간, 주간휴가, 유급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의 종료,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근무조건에 포함되는 사항.
 - (b) 다른 고용조건, 즉 고용의 최저연령, 가사노동의 제한,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고용조건으로 간주되는 사항.
2. 사적 고용계약이 이 조 제1항에 지적된 평등대우의 원칙을 위배함은 위법하다.
3.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비정규성을 이유로 고용주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그들의 의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한되지 아니한다.

- 협약 제28조에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민과 평등한 의료 보장의 권리가 명시됨.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제28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료는 그의 체류나 취업이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 협약 제30조와 제 5조에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부모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내국인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됨. 또한 취업국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해 출신국 언어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출신국의 학교교육제도에 용이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시함.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제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해당국의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다. 어느 부모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거나 취업국에서의 자녀의 체류가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공립의 취학전 교육기관이나 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제45조

1. 이주노동자의 가족은 취업국에서 다음 사항의 이용에 관하여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 (a) 당해 기관과 사업상의 입학요건 및 기타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의 이용.
 - (b) 참가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재훈련시설과 기관의 이용.
 - (c) 각각의 사업의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 및 보건사업의 이용.
 - (d) 문화생활의 이용과 참여.
2. 취업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출신국과 협력하여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특히 현지언어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현지의 학교제도에 용이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모국어 및 출신국의 문화 교육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출신국은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4. 취업국은 필요하다면 출신국의 협력을 받아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특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 협약 제70조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환경 속에서 안전과 위생 등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제70조

당사국은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이 적절성, 안전성, 위생적 기준과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에 상응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민에게 적용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외국인 근로자 가족 관련 경기도 자치법규(조례)

- 경기도는 지역 주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치법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조례는 상위법에 비해 구속력은 떨어지지만 지역의 상황과 지역민의 욕구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인권 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 개선 장치중의 하나임.
- 현재 경기도는 총 24개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조사의 내용과 연관된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음.(표 Ⅱ-2)
-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위한 의료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조례로는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들 수 있음. 이 조례는 의료소외계층에게 무료의약품을 지원하고자 의약품 기탁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팜뱅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비싼 병원 비용과 불법체류신분때문에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해 이 조례의 지원 범위를 확대 시킬 수 있다면 외국인근로자 가족이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에 포용될 수 있을 것임.
-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조례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임.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

〈Ⅱ-2〉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해 활용가능한 경기도 자치법규

범주	조례명	활용방안
의료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녀 교육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상에 외국인근로자 가족 포함
	경기도 보육 조례	
주거생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주택조례	
사회문화활동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야 한다고 규정함.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함할 수 있다면 그들의 복지 및 교육권에 있어서 커다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조례는 ‘경기도 보육 조례’임. 이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현재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한 정도는 아님. 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3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통합 어린이집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3인 이상일 경우 교사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임. 영유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좀 더 적극적인 보육 정책의 대상에 그들의 자녀들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함.
- 주거생활과 관련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자치 법규는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임. 이 조례의 목적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임.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해산비 6. 난방비 7. 전기 요금 8. 장제비 9. 명절·연말·기념일의 위문금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임. 이 조례 역시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주거생활과 관련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치 법규는 ‘경기도 주택조례’임. 조례가 규정하는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항목의 적용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치 법규는 ‘경기도 문화예술 교육 진흥조례’임. 이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이 조례를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게 확대 적용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활동 보장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어야 함.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경우 ‘문화바우처’를 통해 문화예술적 재능을 키우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와 관련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3. 선행 연구

- 본 조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 및 인권 상황 실태에 관해 종합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나 조사는 찾아보기 어려움.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 아동 등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개별 조사들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 그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이혜원 외 2010)는 이주아동 186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한 다양한 교육권 침해 형태를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주아동의 교육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공론화하는 데에 기여한 선구적인 시도임.
- 공교육 진입과정에서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 학교생활 적응과정에서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 공교육이탈과정에서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침해 실태, 부모 또는 아동의 단속·강제 추방에 의한 이주아동의 교육권 침해 실태 등이 조사됨.
- 주목해볼 만한 내용은 공교육 진입과정에서 학교측의 입학 거부가 1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임. 학교측의 입학거부가 있었다는 응답자 중 20%는 비자가 없었고, 12.5%는 비자가 있는데 입학거부를 경험했다고 응답함. 이것은 체류자격이 합법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조차 공교육 진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공교육을 이탈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두고 싶다는 비율이 18.0%를 차지함.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도 존재하지만, 부모들의 경제력이 공교육 이탈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드러남.
- 자녀 교육에 있어 체류 자격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미등록 체류가 아동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인 89.5%는 단속으로 인한 불안정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 2012년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이 주도한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아시아의 창 외 2012)는 외국인 근로자 101명을 대상으로 그들 자녀의 보육환경, 의료환경, 자녀 양육의 어려움, 자녀와의 일상생활, 부모의 경제적 조건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함.
-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전체 응답자 65명 중 23명(35.4%)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학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임(본 조사의 입학 거부율은 21.7%로 2010년 ‘이주 아동의 교육권 실태 조사’의 입학 거부율을 상회하며 2012년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의 입학 거부율에는 미치지 못함. 물론 2012년의 경우는 어린이집 입학 거부율이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려움).

- 입학 거부 문제와 더불어 조사 대상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 대부분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77.7%가 보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 건강의 필수인 ‘예방접종’ 관련 내용에서도 응답자의 52.0%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접종하지 못했다고 답함. 자녀가 아플 경우에 이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비율이 64.7%에 달함.
- 2012년 국내체류 이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최혜지 외 2012)의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 특히 재정 상태는 열악한 편이었고, 응답자 가운데 29.0%는 돈이 없어 밥을 굽었던 경험이 있었음. 미등록 체류자일수록 이런 경험은 빈번해서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무려 31.8%가 지난 1년간 돈이 없어 밥을 굽어 보았다고 응답함.
-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 근로자 중 20.9%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도움을 받은 경우 대부분 친구, 직장사람, 교회나 단체 등 개인적 인맥이나 민간 부분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 했다고 응답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집단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줌.
- 건강 관련 부문에서도 응답자의 32.3%는 지난 1년간 병이나 부상에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함.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 가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주거 형태 조사에서 응답자 한 달 평균 주거비는 무료가 26.6%, 10만원 이하가 4.8%, 11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8.0%, 21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31.4%, 31만원 이상이 29.0%였음.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월세를 지급해도 되는 열악한 주거 시설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됨.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의 10.5%는 지난 1년간 잘 곳이 없어 노숙한 경험이 있다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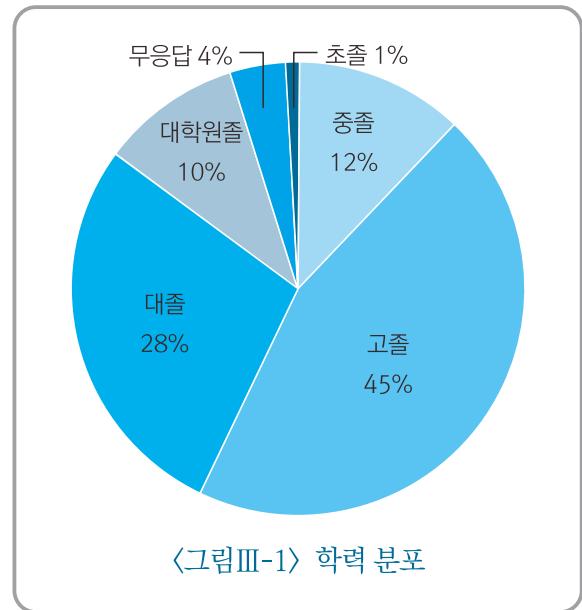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_Ⅲ

조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본 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는 168명으로 남성이 32.7%(55명), 여성이 64.9%(109명)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성별차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현실적인 성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부부가 함께 조사에 참가하더라도 아내가 설문에 응한 경우가 다수였던 조사의 특별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표Ⅲ-1)

○ 응답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4.6%(75명), 대학교 졸업이 28.6%(48명), 대학원 졸업이 10.1%(17명)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83%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들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임. (표Ⅲ-2, 그림Ⅲ-1)



〈표Ⅲ-1〉 성별 분포

	변인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55	32.7
	여	109	64.9
	무응답	4	2.4
계		168	100.0

〈표Ⅲ-2〉 학력별 분포

	변인	빈도(명)	백분율(%)
학력	초졸	1	0.6
	중졸	20	11.9
	고졸	75	44.6
	대졸	48	28.6
	대학원졸	17	10.1
	무응답	7	4.2
계		168	100.0

- 응답자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 27.4%(46명), 필리핀 23.2%(39명), 몽골 20.8%(35명), 방글라데시 8.3%(14명), 중국 6.5%(11명), 스리랑카 4.8%(8명), 인도, 토크, 우간다, 키르기즈스탄 등 8.9%(15명)로 매우 다양했음.

응답자의 출신 국가가 다양하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시사함. 첫째, 몽골 등 특정 국가 출신자만이 가족 결합 혹은 가족 구성의 의지와 욕구가 강하다는 통설은 지지되기 어려움. 둘째, 향후 외국인 근로자 가족 규모의 증대가 예견됨. (표 III-3)

- 응답자의 혼인 상태는 기혼이 73.8% (124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음. 별거나 이혼은 7.8%(13명)에 불과했음.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이 2011년 10.1%, 2012년 9.5%였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다문화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물론 조사 대상을 ‘가족’으로 제한함으로써 해체 가정의 구성원들이 조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효과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 III-4)

〈표 III-3〉 국적별 분포

	변인	빈도(명)	백분율(%)
국적	중국	11	6.5
	방글라데시	14	8.3
	스리랑카	8	4.8
	베트남	46	27.4
	필리핀	39	23.2
	몽골	35	20.8
	기타	15	8.9
계		1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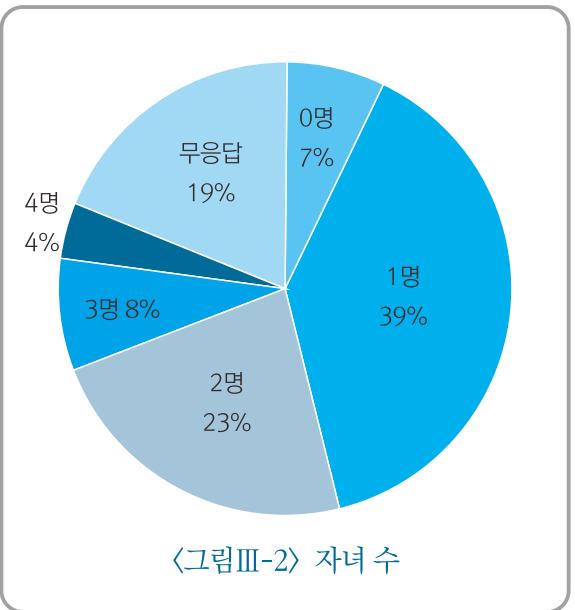
〈표III-4〉 혼인 상태

	변인	빈도(명)	백분율(%)
혼인 상태	기혼	124	73.8
	사별	1	0.6
	별거	10	6.0
	이혼	3	1.8
	기타	9	5.4
	무응답	21	12.5
계		168	100.0

○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7.1%(12명)에 불과했고, 무응답을 제외한 74%(124명)의 응답자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자녀가 1명인 응답자가 39.3%(66명), 2명인 응답자가 22.6%(38명)이었음. 자녀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도 11.9%에 달했음.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생활 수준이 열악하고 체류 안정성도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현재와 같은 생활 환경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이들의 자녀 문제가 매우 심각한 방식으로 발현될 것으로 예전됨.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됨.(표III-5, 그림III-2)



〈표III-5〉 자녀 수

	변인	빈도(명)	백분율(%)
자녀 수	0	12	7.1
	1	66	39.3
	2	38	22.6
	3	14	8.3
	4	6	3.6
	무응답	32	19.0
계		168	100.0

〈표 III-6〉 체류 자격

	변인	빈도(명)	백분율(%)
등록 여부	등록	66	39.3
	미등록	92	54.8
	무응답	10	6.0
계		1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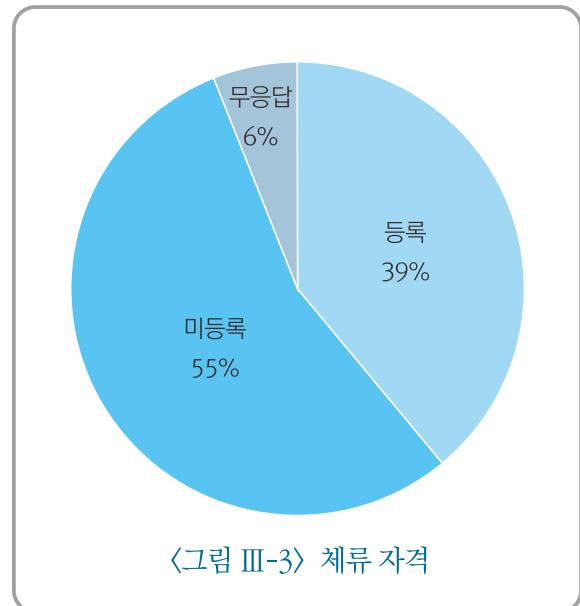
- 응답자의 현재 체류 자격은 등록이 39.3% (66명), 미등록이 54.8%(92명)로 등록상태의 근로자보다 미등록 상태의 근로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체류 자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임. 첫째, 가족을 구성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출산과 양육 등으로 인해 체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미등록 상태가 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둘째, 합법적인 상태에서 가족 형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39.3%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III-6, 그림 III-3)

-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 중 33.4%(27명)는 E-9 비자를, 7.4%는 H-2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기타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지하다시피 E-9 비자는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비전문취업비자이며, H-2는 특례 고용허가대상 재외동포들에게 주어지는 방문취업비자임. 이들 비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은 가족 결합 금지와 정주화 방지라는 고용허가제의 정책 목표 자체가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표 III-7)

- 한국 최초 입국 시 응답자가 소지한 비자 유형은 총 18가지였으며, 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비율이 28.0%(4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2 비자 9.5%(16명), C-3 비자 5.4%(9명) 순이었음.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유형과 동기, 그리고 경로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시사함.



〈표 III-7〉 현재 비자

	변인	빈도(명)	백분율(%)
현재 비자	E-9	27	33.4
	H-2	6	7.4
	기타	48	59.2
계		81	100.0

이를테면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끼리 가족을 구성한 후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이외에도 첫째 자녀는 본국에서 데려오고, 둘째 자녀부터 한국에서 출산하는 경우, 유학비자로 입국하여 추후 노동자로 생활하다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결혼이민자 중 한국인 남편과 이혼 후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한국에서 재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등이 모두 가능함. (표 III-8)

- 응답자의 입국 경로를 살펴보면, 고용허가제나 산업연수제를 통한 입국이 33.3%(56명)로 관광 비자를 통한 입국(15.5%, 26명)을 비롯한 다른 유형의 입국을 압도하는 비중임. 이 결과의 시사점은 두 가지임. 이 결과 역시 고용허가제의 정책 목표와는 달리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내부에서 가족 형성과 정주화 경향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입국시

〈표 III-8〉 한국 최초 입국 시 비자 유형

		변인	빈도(명)	백분율(%)
비자의 종류	B-2	관광통과	16	9.5
	C-3	단기방문	9	5.4
	D-2	유학	2	1.2
	D-3	기술연수	8	4.8
	D-4	일반연수	1	0.6
	D-6	종교	1	0.6
	E-3	연구	1	0.6
	E-5	전문직업	1	0.6
	E-6	예술행	4	2.4
	E-9	고용허가	47	28.0
	F-2	거주	3	1.8
	F-3	동반	4	2.4
	F-4	재외동포	3	1.8
	F-5	영주(동포제외)	1	0.6
	F-6	결혼이민	2	1.2
	G-1	기타	5	3.0
	H-2	방문취업	6	3.6
	D-8	기업투자	4	2.4
무응답		48	28.6	
무효		2	1.2	
계		168	100.0	

부터 ‘불법체류’를 염두에 두는 소위 ‘기획이탈자’들이 아니라, 합법적인 취업 생활 가운데 가족을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체류 기간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표 III-9)

〈표 III-9〉 응답자의 입국 경로

	변인	빈도(명)	백분율(%)
입국 경로 - 본인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	56	33.3
	브로커를 통한 관광비자	26	15.5
	종교인의 도움	7	4.2
	이주민 센터의 도움	2	1.2
	기타	41	24.4
	무응답	36	21.4
계		168	100.0

〈표 III-10〉 배우자의 입국 경로

	변인	빈도(명)	백분율(%)
입국 경로 - 배우자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	37	22.0
	브로커를 통한 관광비자	19	11.3
	종교인의 도움	5	3.0
	이주민 센터의 도움	1	0.6
	기타	38	22.6
	무응답	68	40.5
계		168	100.0

〈표 III-11〉 자녀 입국 경로(중복체크)

	변인	빈도(명)	백분율(%)
입국 경로 -자녀	브로커를 통한 관광비자	10	7.6
	종교인의 도움	9	6.8
	이주민센터의 도움	3	2.3
	한국 출생	77	58.3
	기타	33	25.0
계		132	100.0

- 배우자의 입국 경로도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를 통한 합법적인 입국이 22.0%(37명)로 브로커를 통한 관광비자 가지고 입국한 경우(11.3%, 19명)를 압도함. (표 Ⅲ-10)
- 응답자 자녀의 경우 응답자의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비율(16.7%, 22명)보다는 한국에서 출생한 비율이 58.3%(77명)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아시아의 창 2012).

이것은 가족 ‘재’결합 금지만으로 한국의 외국인 정책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족 형성’의 경향성을 저지할 수 없음을 뜻하는 지표로 주목을 요함. 또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자녀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실질적인 한국인’이라는 점을 의미함. (표 Ⅲ-11)

2. 고용 실태

- 응답자의 종사 업종에 대한 질문에 공장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4.9%(109명)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0.7%(18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식당, 농사, 장사 등에 종사하는 경우도 나타남. (표 III-12)
- 종사 업종의 분포는 체류 자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공장노동자의 비율이 71.7%로 등록 체류자의 공장 노동 비율 56.1%를 압도함. 등록 체류자의 경우 공장노동자가 다수이긴 하나 장사(4.5%)와 기타(16.7%, 자영업자로 추정됨)로 답한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직업선택의 폭이 미등록 체류자에 비해 비교적 폭 넓다는 사실이 확인됨. (표 III-13, 표 III-14)

〈표 III-12〉 종사 업종(전체)

	변인	빈도(명)	백분율(%)
종사 업종 - 전체	공장	109	64.9
	식당	6	3.6
	장사	3	1.8
	사무실	2	1.2
	농사	4	2.4
	가사도우미	18	10.7
	기타	21	12.5
	무응답	5	3.0
계		168	100.0

〈표 III-13〉 종사 업종(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종사 업종 - 등록	공장	37	56.1
	가사도우미	8	12.1
	식당	3	4.5
	장사	3	4.5
	사무실	1	1.5
	기타	11	16.7
	무응답	3	4.5
계		66	100.0

〈표 III-14〉 종사 업종(미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종사 업종 - 미등록	공장	66	71.7
	가사도우미	9	9.8
	농사	4	4.3
	식당	3	3.3
	사무실	1	1.1
	기타	9	9.8
계		92	100.0

- 응답자 가운데 남편의 한 달 평균 수입은 153만원으로 나타났고, 부인은 114만원으로 나타남. 남편과 부인의 합산 평균 수입은 267만원으로 나타남.

2013년 한국인의 평균임금이 3,346,000원(20.8일 근무)으로, 2012년 가구 평균 소득이 408만원으로 보고된 바 있다는 점에서(통계청 2013, 2012), 외국인근로자 가족 개인 및 가구 소득이 한국인 개인 및 일반 가정 소득의 50%내지 60% 수준에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줌.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예상됨. (표 III-15)

〈표 III-15〉 응답자와 배우자의 한달 평균 수입

성별	한 달 평균 수입
남	153만원
여	114만원
계	211.74만원

※ 남성과 여성의 한 달 평균 수입 총액이 다른 이유는 남·여 각각 표기를 하지 않고 총액만 기입한 응답자들이 있어 개인의 평균이 아니라 응답자 전체의 총액임

〈표 III-16〉 임금체불 경험 여부(전체)

	변인	빈도(명)	백분율(%)
임금체불 경험 - 전체	그렇다	44	26.2
	그렇지 않다	121	72.0
	무응답	3	1.8
계		168	100.0

- 최근 1년간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6.2%(44명)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72.0%(121명)는 임금체불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임금체불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이 5.2%로 조사된 바 있다는 점(정기선 외 2010)에서 26.2%는 매우 높은 수치임.

외국인 근로자 가족 구성원들이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보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함. (표 III-16)

- 미등록 체류 응답자가 등록 체류 응답자에 비해서 임금 체불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미등록 31.5%, 등록 18.2%). 미등록이라는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이 임금 지급에 있어서 차별과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표 III-17, 표 III-18)

〈표 III-17〉 임금체불 경험 여부(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임금체불 경험- 등록	그렇다	12	18.2
	그렇지 않다	54	81.8
계		66	100.0

〈표 III-18〉 임금체불 경험 여부(미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임금체불 경험 - 미등록	그렇다	29	31.5
	그렇지 않다	61	66.3
	무응답	2	2.2
계		92	100.0

〈표 III-19〉 임금체불 횟수

	변인	빈도(명)	백분율(%)
임금체불 횟수	1회	19	43.2
	2회	14	31.8
	3회	4	9.1
	4회	1	2.3
	5회이상	3	6.8
	무응답	3	6.8
계		44	100.0

- 임금체불 횟수(최근 1년간)는 1회가 43.2%(19명), 2회가 31.8%(14명)로 압도적이었으나 5회 이상도 6.8%(3명)으로 나타남.(표 III-19)
- 체불 임금을 해결하는데 걸린 평균기간과 관련해서는 무려 38.6%(17명)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함.(표 III-20)
- 거주지역 시군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훈련 참가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인 83.9%(141명)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기능과 기술 습득 욕구가 매우 높은 데 반해 관련 서비스는 아주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함. (표 III-21)
- 시군에서 제공하는 직업소개(알선)를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7.4%(130명)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15.5%(26명)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이 구직 및 이직시 고용지원센터 등 공적인 기관이 아니라 미등록 인력 파견업체나 사적인 통로를 활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지표로, 미등록 인력 파견업체에 의한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알려져 있는 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표 III-22)

〈표 III-20〉 임금체불해결 평균기간

	변인	빈도(명)	백분율(%)
임금체불 해결 기간	1~2달	14	31.8
	2~3달	7	15.9
	3~4달	3	6.8
	5~6달	1	2.3
	6달 이상	1	2.3
	못받음	17	38.6
	무응답	1	2.3
계		44	100.0

〈표 III-21〉 직업교육 경험

	변인	빈도(명)	백분율(%)
직업교육 경험	있다	23	13.7
	없다	141	83.9
	무응답	4	2.4
계		168	100.0

〈표III-22〉 직업소개 경험

	변인	빈도(명)	백분율(%)
직업소개 (알선)경험	있다	26	15.5
	없다	130	77.4
	무응답	12	7.1
계		168	100.0

3. 의료실태

- 응답자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6%(61명) 가량만이 긍정적으로 답함.

이는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63% 가량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평가한다는 점(김광기 외 2010)과 비교되는 수치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시사함.(표Ⅲ-23)

- 응답자가 느끼는 건강상태는 체류신분에 따라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남. 등록 체류자 응답자는 45.4%(30명)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 미등록 응답자의 경우는 불과 29.3%(27명)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함.

체류의 안정성 여부가 응답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결과임.(표 Ⅲ-24, 표 Ⅲ-25)

〈표 Ⅲ-23〉 응답자가 느끼는 건강상태(전체)

	변인	빈도(명)	백분율(%)
건강하다고 느끼는 정도 - 전체	매우 그렇다	15	8.9
	그렇다	46	27.4
	보통이다	78	46.4
	별로그렇지 않다	25	14.9
	매우 그렇지 않다	2	1.2
	무응답	2	1.2
계		168	100.0

〈표 Ⅲ-24〉 응답자가 느끼는 건강상태(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건강하다고 느끼는 정도 - 등록	매우 그렇다	7	10.6
	그렇다	23	34.8
	보통이다	23	34.8
	별로그렇지 않다	12	18.2
	무응답	1	1.5
계		66	100.0

〈표 III-25〉 응답자가 느끼는 건강상태(미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건강하다고 느끼는 정도 - 미등록	매우 그렇다	4	4.3
	그렇다	23	25.0
	보통이다	50	54.3
	별로그렇지 않다	13	14.1
	매우 그렇지 않다	2	2.2
계		92	100.0

- 응답자의 41.7%(70명)만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56.0%(94명)는 국민건강보험의 '없다'라고 응답함. 외국인 근로자 가족 전체의 의료 보험 가입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보여줌(표 III-26)
- 체류 자격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 등록 체류자의 경우는 36.4%(24명)가 건강보험 미가입자였는데 반해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는 무려 71.7%(66명)가 미가입자였음.

〈표 III-26〉 건강보험 보유 여부(전체)

	변인	빈도(명)	백분율(%)
건강보험 보유 여부 - 전체	있다	70	41.7
	없다	94	56.0
	무응답	4	2.3
계		168	100.0

〈표 III-27〉 건강보험 보유 여부(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건강보험 보유 여부 - 등록	있다	42	63.6
	없다	24	36.4
계		66	100.0

〈표 III-28〉 건강보험 보유 여부(미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건강보험 보유 여부 - 미등록	있다	23	25.0
	없다	66	71.7
	무응답	3	3.3
계		92	100.0

주목할 점은 미등록 체류자는 원천적으로 건강 보험 가입이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23명)이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는 점임. ‘건강 보험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다’라거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보험’이나 ‘민간의료공제’가입 경험이 답변에 반영된 것으로 추론됨.

이 결과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건강권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미등록 체류 응답자 본인 또는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리라는 것을 의미함. 전체 응답자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총 의료비용은 평균 174만원으로 나타남.(표 III-27, 표 III-28)

- 병원비가 없을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국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31.2%(53명)로 가장 높았으며, 아무도 도움주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1.8%(37명)로 높게 나타남.

외국인 지원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20.6%(35명)였는데 반해, 자자체라는 응답자는 불과 1.8%(3명)에 그침.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긴급 의료비 문제를 사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해 해결할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참아가면서 생활’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과 관련한 공적 부조 체계는 시민 사회 지원 체제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점 등을 시사함. (표 III-29)

〈표 III-29〉 병원비가 없을 때 도움을 준 사람

	변인	빈도(명)	백분율(%)
병원비가 없을 때 도움을 준 사람	모국친구	53	31.2
	아무도 도움 안줌	37	21.8
	외국인 지원단체	35	20.6
	한국인 친구	17	10.0
	자자체	3	1.8
	기타	25	14.7
계		170	100.0

※ 응답자가 복수 응답으로 답해 모든 개별 응답들을 각각 유효처리(170), 합계는 전체응답자 수 168명보다 큼

○ 응답자 본인 또는 가족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4%(120명)로 매우 높았으며,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6.8%(45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30)

○ 시군 제공 무료접종서비스를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1% (101명)가 ‘없다’라고 응답했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8.7%(65명)에 불과했음. 대부분의 무료 접종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영유아 자녀들이 매우 취약한 건강 사각 지대에서 성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그들이 무료접종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정보의 부족, 불법 체류로 인한 신분 노출의 위험 등이 포함됨. 영유아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도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임. (표III-31)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건강상담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3.8%(124명)가 ‘없다’라고 응답했고, 23.8%(40명)만이 ‘있다’라고 응답함.(표 III-32)

〈표 III-30〉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 경험

	변인	빈도(명)	백분율(%)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 경험	있다	45	26.8
	없다	120	71.4
	무응답	3	1.8
계		168	100.0

〈표III-31〉 무료접종서비스 이용 경험

	변인	빈도(명)	백분율(%)
무료접종 서비스 이용 경험	있다	65	38.7
	없다	101	60.1
	무응답	2	1.2
계		1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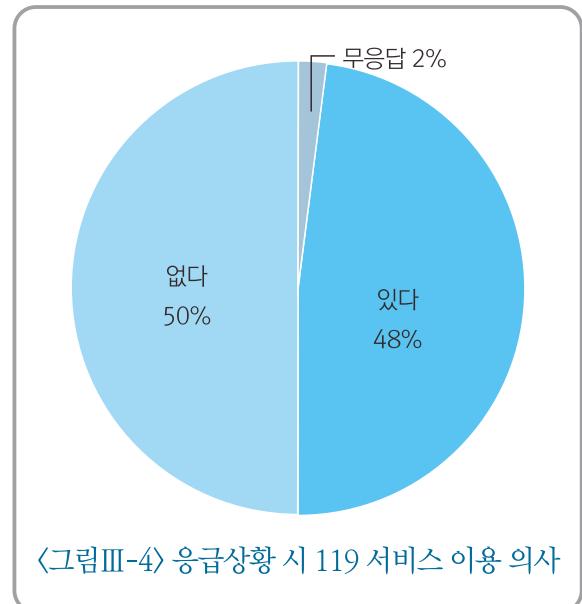
〈표 III-32〉 건강상담서비스 이용 경험

	변인	빈도(명)	백분율(%)
건강상담서비스 이용 경험	있다	40	23.8
	없다	124	73.8
	무응답	4	2.4
계		168	100.0

- 응급 상황 시 119 서비스 이용 의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50.0%(84명)가 이용할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했고, 47.6%(80명)만이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함.

이것은 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공공 의료 서비스 체제를 이용할 의사가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 시켜준 지표로서, 최소한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됨. (그림Ⅲ-4)

- 등록 체류자의 54.5%(36명)이 119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는 43.5%(40명)만이 이용 의사를 밝힘. 체류 자격 여부가 긴급 의료 서비스 이용 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표 Ⅲ-33, 표 Ⅲ-34)



〈표 Ⅲ-33〉 응급상황 시 119 서비스 이용 의사(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119 서비스 이용의사 -등록	있다	36	54.5
	없다	28	42.4
	무응답	2	3.0
계		66	100.0

〈표 Ⅲ-34〉 응급상황 시 119 서비스 이용 의사(미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119 서비스 이용의사 -미등록	있다	40	43.5
	없다	52	56.5
계		92	100.0

- 119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불법체류신분(50.5%, 50명), 비용의 문제(16.2%, 16명), 소통의 문제(12.1%, 12명) 등의 순이었음.

미등록 체류자가 119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119 서비스 등 긴급 서비스 종사자들이 통보 의무 유예 대상자라는 점 등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어야 함.(표 III-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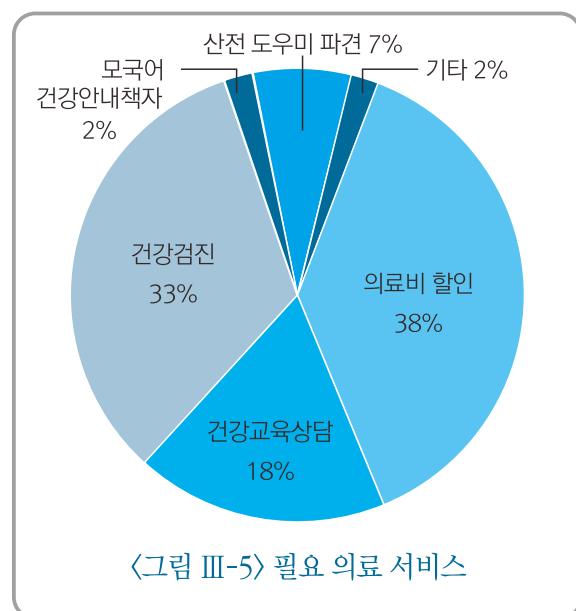
〈표 III-35〉 119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는 이유

	변인	빈도(명)	백분율(%)
119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는 이유	불법체류신분 때문에	50	50.5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할 것 같아서	16	16.2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12	12.1
	외국인이라 사용 못 할 것 같아서	4	4.0
	기타	17	17.2
계		99	100.0

※ 응답자가 복수 응답으로 답해 모든 개별 응답들을 각각 유효처리, 합계는 전체응답자 수 84명 보다 큼

-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내용으로는 의료비 할인(34.9%, 67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강검진(30.7%, 59명), 건강에 대한 교육 상담(17.2%, 33명), 모국어 건강 안내 책자(8.9%, 17명) 배포 등이 그 뒤를 이었음.

낮은 의료보험가입율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건강권 보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됨.(표 III-36, 그림 III-5)



〈표 III-36〉 필요 의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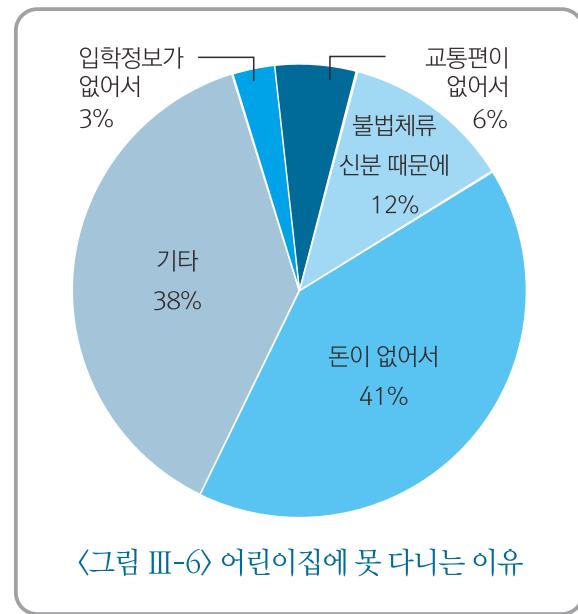
	변인	빈도(명)	백분율(%)
필요 의료 서비스	의료비 할인	67	34.9
	건강교육상담	33	17.2
	건강검진	59	30.7
	모국어 건강안내책자	17	8.9
	산전 도우미 파견	13	6.8
	기타	3	1.6
계		192	100.0

※ 응답자가 복수 응답으로 답해 모든 개별 응답들을 각각 유효처리(192명), 합계는 전체 응답자 수 168명보다 큼

4. 자녀양육 실태

○ 응답자 자녀의 71.6%(68명)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28.4%(27명)는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41.2%(14명)로 압도적이었고, ‘불법체류신분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8%(4명)로 두 번째 이유로 선택됨.

한국에서 나고 자란 ‘실질적인 한국인’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한국의 보육 지원 시스템에도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가족 영유아 자녀의 보육 및 교육권이 매우 불안정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임.(표 III-37, 그림 III-6)



〈그림 III-6〉 어린이집에 못 다니는 이유

〈표 III-37〉 어린이집에 못 다니는 이유

	변인	빈도(명)	백분율(%)
어린이집에 못 다니는 이유	돈이 없어서	14	41.2
	불법체류신분 때문에	4	11.8
	교통편이 없어서	2	5.9
	입학정보가 없어서	1	2.9
	기타	13	38.2
계		34	100.0

※ 응답자가 복수 응답으로 답해 모든 개별 응답들을 각각 유효처리(34명), 합계는 전체 응답자 수 27명보다 큼

- 응답자의 80.2%(73명)는 시군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불과 19.8%(18명)만이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38)
 - 시군 제공 자녀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응답자의 72.8%(67명)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27.2%(25명)는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III-39)
 -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64.0% (48명)는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36.0%(27명)가 공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들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재학 연령대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높은 수치임. 각급 지자체에 ‘다문화’ 특별 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와 ‘다문화’ 거점학교로 지정된 중등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과 비교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임.(표 III-40)
- 학교를 안 다니는 이유는 기타를 제외하는 경우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14.0%, 4명)와 불법체류 신분의 문제(11.1%, 3명)로 압축됨.(표 III-41)

〈표 III-38〉 시군의 보육료 지원 여부

	변인	빈도(명)	백분율(%)
보육료 지원 여부	그렇다	18	19.8
	그렇지 않다	73	80.2
계		91	100.0

〈표 III-39〉 시군의 자녀돌봄 서비스 지원 여부

	변인	빈도(명)	백분율(%)
자녀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그렇다	25	27.2
	그렇지 않다	67	72.8
계		92	100.0

〈표 III-40〉 자녀의 학교 재적 여부

	변인	빈도(명)	백분율(%)
학교 재적 여부	그렇다	48	64.0
	그렇지 않다	27	36.0
계		75	100.0

- 응답자의 72.7%(48명)는 자녀 입학 시 교육청이나 주민센터로부터 입학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표 III-42)
- 시군 제공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도 71.4%(50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표 III-43)
-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려 21.7%(15명)의 응답자가 자녀를 입학 시킬 때 학교 측의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임.

참고로 2010년 ‘이주 아동의 교육권 실태 조사’의 입학 거부율은 15.2%였으며, 2012년 ‘이주 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의 보육시설 입학 거부율은 35.4%였음(이혜원 외 2010, 아시아의 창 외 2012). (표 III-44)

〈표 III-41〉 자녀가 학교를 안 다니는 이유

	변인	빈도(명)	백분율(%)
학교를 안 다니는 이유	돈이 없어서	4	14.8
	불법체류신분 때문에	3	11.1
	입학절차를 몰라서	1	3.7
	따돌림을 당할까봐	1	3.7
	기타	9	33.3
	무응답	9	33.3
계		27	100.0

〈표 III-42〉 자녀입학 시 안내 여부

	변인	빈도(명)	백분율(%)
자녀 입학 안내 여부	그렇다	18	27.3
	그렇지 않다	48	72.7
계		66	100.0

〈표 III-43〉 자녀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 이용 여부

	변인	빈도(명)	백분율(%)
자녀 한국어 교육 서비스 이용 여부	그렇다	20	26.6
	그렇지 않다	50	71.4
계		70	100.0

〈표 III-44〉 자녀 학교 입학 시 학교의 입학 거부 경험 유무

	변인	빈도(명)	백분율(%)
자녀 입학 시 학교 거부 경험 유무	그렇다	15	21.7
	그렇지 않다	54	78.3
계		69	100.0

- 응답자의 60.7%(37명)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다문화 전담’ 교사가 없는 것으로 답변함.(표 III-45)
- 다문화 전담 교사가 있는 경우에도 57.9%(22명)는 교사들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표 III-46)
-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도 62.1%(36명)에 해당하는 대다수 응답자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47)

〈표 III-45〉 자녀 재학 학교 다문화 전담 교사 유무

	변인	빈도(명)	백분율(%)
다문화 전담교사 유무	있다	24	39.3
	없다	37	60.7
계		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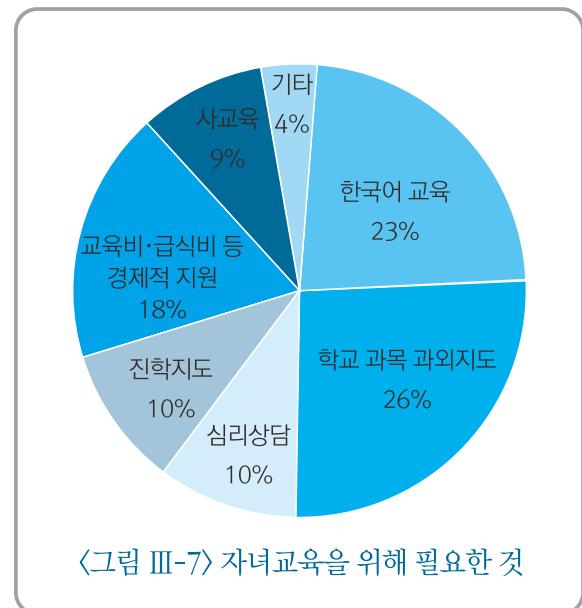
〈표 III-46〉 다문화 전담 교사 도움 여부

	변인	빈도(명)	백분율(%)
다문화 전담교사 도움여부	그렇다	16	42.1
	그렇지 않다	22	57.9
계		38	100.0

〈표 III-47〉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변인	빈도(명)	백분율(%)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있다	22	37.9
	없다	36	62.1
계		58	100.0

- ‘학습지원 멘토링’ 서비스 역시 78.9%, (45명)의 응답자들이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Ⅲ-48)
- 어린이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녀는 25.0%(24명)에 불과 했음. (표 Ⅲ-49)
- 응답자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 한 서비스 내용으로 학교 과목 과외지도 25.7%(29명), 한국어 교육 23.0%(26명), 교육비·급식비 등 경제적 지원 18.6% (21명), 심리·상담지원 9.7%(11명), 진학 지도 9.7%(11명) 등을 선택함. (표 Ⅲ-50, 그림7)



〈표Ⅲ-48〉학습 지원 멘토링 서비스 이용 여부

	변인	빈도(명)	백분율(%)
학습지원 멘토링 서비스 이용 여부	있다	12	21.1
	없다	45	78.9
계		57	100.0

〈표 Ⅲ-49〉 어린이·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참여 경험

	변인	빈도(명)	백분율(%)
어린이 · 청소년 문화 체험	있다	24	25.0
	없다	74	75.0
계		98	100.0

〈표 III-50〉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변인	빈도(명)	백분율(%)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한국어 교육	26	23.0
	학교 과목 과외지도	29	25.7
	심리상담	11	9.7
	진학지도	11	9.7
	교육비·급식비 등 경제적 지원	21	18.6
	사교육	10	8.8
	기타	5	4.4
계		113	100.0

5. 주거생활 실태

- 응답자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평균 '129만원'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73.8%(124명)는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린 경험'이 있었으며, 돈을 빌린 대상은 모국 친구가 83.6%(117명)로 압도적이었음. 모국 친구 다음으로는 한국인 친구(7.9%, 11명), 이주민 활동가, 종교인의 순이었음. (표Ⅲ-51)

〈표Ⅲ-51〉 돈을 빌려준 사람

	변인	빈도(명)	백분율(%)
돈을 빌려준 사람	모국 친구	117	83.6
	한국인 친구	11	7.9
	이주민 활동가	5	3.6
	종교인	5	3.6
	기타	2	1.4
계		140	100.0

※ 응답자가 복수 응답으로 답해 모든 개별 응답들을 각각 유효처리(140명), 합계는 전체응답자 수 124명보다 큼

- 생활비 주 지출 분야는 식료품비(30%, 115명), 각종 관리비(25.1%, 96명), 의료비(18.8%, 72명), 자녀교육비(14.1%, 54명) 순으로 나타남. 생활비의 대부분이 먹고(식료품비) 사는(관리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비되고 있음이 확인됨. (표Ⅲ-52)

〈표Ⅲ-52〉 생활비 주요 지출 항목

	변인	빈도(명)	백분율(%)
주요 생활비 지출항목	식료품비	115	30.0
	의료비	72	18.8
	자녀교육비	54	14.1
	문화생활	9	2.3
	의류비	17	4.4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관리비)	96	25.1
	기타	20	5.2
계		3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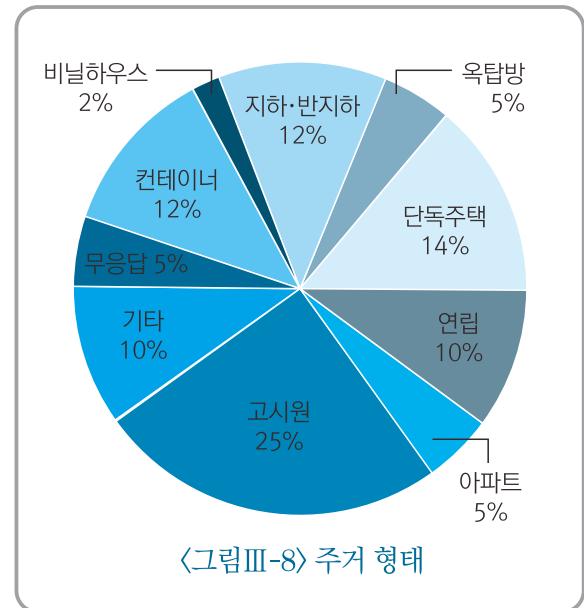
※ 응답자가 복수 응답으로 답해 모든 개별 응답들을 각각 유효처리(383명), 합계는 전체응답자 수 168명보다 큼

- 응답자의 주거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고시원, 컨테이너, 지하나 반지하 등 취약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53, 그림8)

- 주거 형태에 있어서 체류 자격별로 주목 할 만한 차이점이 확인됨.

등록 체류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거 공간은 주로 지하나 반지하(16.7%, 11명), 단독주택(16.7%, 11명) 등이었는데 반해 미등록 체류자의 주거공간은 고시원(34.8%, 32명)이 압도적이었으며 컨테이너(14.1%, 13명)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54, 표 III-55)



〈표 III-53〉 주거 형태(전체)

	변인	빈도(명)	백분율(%)
주거 형태 - 전체	컨테이너	21	12.5
	비닐하우스	3	1.8
	지하·반지하	21	12.5
	옥탑방	8	4.8
	단독주택	24	14.3
	연립	16	9.5
	아파트	9	5.4
	고시원	42	25.0
	기타	16	9.5
	무응답	8	4.8
계		168	100.0

〈표 III-54〉 주거 형태(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주거 형태 - 등록	지하·반지하	11	16.7
	단독주택	11	16.7
	고시원	10	15.2
	연립	9	13.6
	컨테이너	6	9.1
	아파트	6	9.1
	옥탑방	2	3.0
	기타	10	15.2
	무응답	1	1.5
계		66	100.0

〈표 III-55〉 주거 형태(미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주거 형태 - 미등록	고시원	32	34.8
	컨테이너	13	14.1
	단독주택	13	14.1
	연립	7	7.6
	지하·반지하	7	7.6
	옥탑방	4	4.3
	비닐하우스	3	3.3
	아파트	3	3.3
	기타	5	5.4
	무응답	5	5.4
계		92	100.0

- 주거지 점유 형태는 월세가 67.9%(114명)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세 13.1%(22명), 무상 임대 8.3%(14명)으로 순이었음. 월세 평균 비용은 '29만원'으로 나타남. (표 III-56)
- 체류 자격별로 점유 형태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월세 형태의 주거 점유율은 미등록 체류자가 등록 체류자에 비해 높았으며(등록 60.6%, 미등록 73.9%), 전세 형태의 주거 점유율은 등록 체류자가 미등록 체류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등록 24.2%, 미등록 6.5%).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 부재하는 관계로 전세보증금 보장을 위한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갑작스레 강제 퇴거를 당할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짐으로 주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형태의 거주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됨.(표III-57, 표III-58)

〈표 III-56〉 주거지 점유형태(전체)

	변인	빈도(명)	백분율(%)
점유 형태 - 전체	무상	14	8.3
	월세	114	67.9
	전세	22	13.1
	자기집	4	2.4
	기타	4	2.4
	무응답	10	6.0
계		168	100.0

〈표III-57〉 주거지 점유형태(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점유 형태 - 등록	월세	40	60.6
	전세	16	24.2
	무상	5	7.6
	자기집	3	4.5
	무응답	2	3.0
계		66	100.0

〈표III-58〉 주거지 점유형태(미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점유 형태 - 미등록	월세	68	73.9
	무상	8	8.7
	전세	6	6.5
	자기집	1	1.1
	기타	3	3.3
	무응답	6	6.5
계		92	100.0

- 습기로 인한 곰팡이 문제(21.3%), 쥐·바퀴벌레문제(18.3%), 햅볕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17.5%), 온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11.7%) 등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경험하는 주거 환경과 질은 매우 열악하고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표 III-59)
- 생활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다문화 가족과 비교해서 시군으로부터 받는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응답자의 78.0%(131명)는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받은 경험이 없었음.(표 III-60)

〈표 III-59〉 주거지의 어려움

	변인	빈도(명)	백분율(%)
주거지의 어려움	온수	28	11.7
	일조(햇볕)	42	17.5
	외풍	13	5.4
	쥐.바퀴벌레	44	18.3
	습기로 인한 곰팡이	51	21.3
	누수	15	6.3
	화재나 붕괴	4	1.7
	기타	43	17.9
계		240	100.0

※ 응답자가 복수 응답으로 답해 모든 개별 응답들을 각각 유효처리(240명), 합계는 전체응답자 수 168명보다 큼

〈표 III-60〉 사회복지사 방문 경험

	변인	빈도(명)	백분율(%)
사회복지사 방문 경험	있다	24	14.3
	없다	131	78.0
	무응답	13	7.7
계		168	100.0

- 시군 제공 생활·법률 서비스를 받은 경험에 대해 85.7%(144명)의 응답자는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표 III-61)
- 응답자의 76.8%(129명)는 시군 제공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표 III-62)

〈표III-61〉 생활·법률 서비스 이용 경험

	변인	빈도(명)	백분율(%)
생활 법률 서비스 이용 경험	있다	9	5.4
	없다	144	85.7
	무응답	15	8.9
계		168	100.0

〈표 III-62〉 시군 제공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서비스 이용 경험

	변인	빈도(명)	백분율(%)
원격교육이나 서비스 이용 경험	있다	25	14.9
	없다	129	76.8
	무응답	168	8.3
계		168	100.0

-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도 매우 낮아서 응답자의 64.3%(108명)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변함.(표 III-63)
- 교육 참여 여부는 체류 자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냄, 등록 체류자의 39.4%(26명)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는데 반해,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는 22.8%(21명)만이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표 III-64, 표 III-65)

〈표 III-63〉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전체)

	변인	빈도(명)	백분율(%)
한국어 교육 참여 경험 - 전체	있다	49	29.2
	없다	108	64.3
	무응답	11	6.5
계		168	100.0

〈표 III-64〉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한국어 교육 참여 경험 - 등록	있다	26	39.4
	없다	38	57.6
	무응답	2	3.0
계		66	100.0

〈표 III-65〉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미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한국어 교육 참여 경험 - 미등록	있다	21	22.8
	없다	65	70.7
	무응답	6	6.5
계		92	100.0

- 시군 제공 통·번역 서비스 역시 단지 13.1%만이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이것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통·번역 센터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생활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언어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표 III-66)

〈표 III-66〉 통·번역서비스 이용 경험

	변인	빈도(명)	백분율(%)
통·번역 서비스 이용 경험	있다	22	13.1
	없다	131	78.0
	무응답	15	8.9
계		168	100.0

6. 사회문화활동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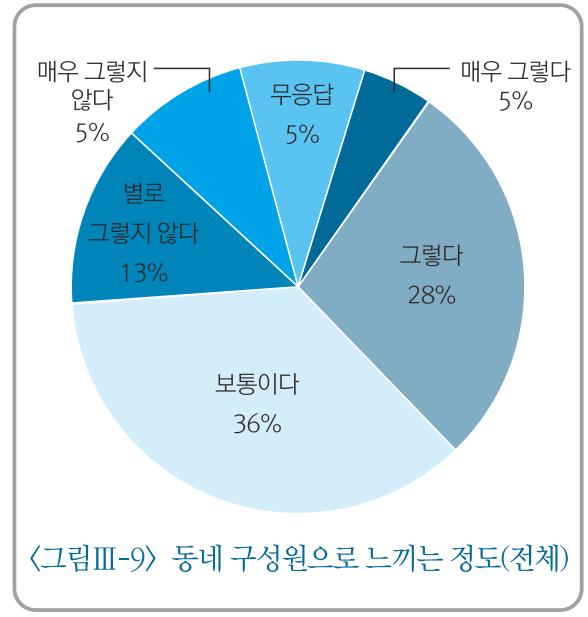
- 응답자의 33.4%(58명)는 자신이 생활하는 동네의 구성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70% 이상이 그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기준의 조사보다는 낮은 수치임(김현숙 2011).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 사회와의 친밀도를 구축하고 싶은 욕구 역시 비교적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리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표임. (표 III-67, 그림 III-9)

- 동네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감은 미등록 체류자가 등록 체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응답자의 35.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데 비해 등록 체류자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은 28.8%였음. (표 III-68, 표 III-69)



〈그림III-9〉 동네 구성원으로 느끼는 정도(전체)

〈표 III-67〉 동네 구성원으로 느끼는 정도(전체)

	변인	빈도(명)	백분율(%)
동네 구성원으로 느끼는 정도	매우 그렇다	9	5.4
	그렇다	47	28.0
	보통이다	61	36.3
	별로그렇지 않다	21	12.5
	매우 그렇지 않다	15	8.9
	무응답	15	8.9
계		168	100.0

〈표 III-68〉 동네 구성원으로 느끼는 정도(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동네 구성원으로 느끼는 정도 - 등록	매우 그렇다	4	6.1
	그렇다	15	22.7
	보통이다	25	37.9
	별로그렇지 않다	9	13.6
	매우 그럴지 않다	9	13.6
	무응답	4	6.1
계		66	100.0

〈표 III-69〉 동네 구성원으로 느끼는 정도(미등록)

	변인	빈도(명)	백분율(%)
동네 구성원으로 느끼는 정도 - 미등록	매우 그렇다	3	3.3
	그렇다	30	32.6
	보통이다	35	38.0
	별로그렇지 않다	11	12.0
	매우 그럴지 않다	6	6.5
	무응답	7	7.6
계		92	100.0

- 응답자의 69.6%(17명)은 시군 주최 행사나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표 III-70)
- 응답자의 72.6%(122명)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없었음. (표 III-71)
- 응답자의 55.4%(93명)는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본 경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III-72)

〈표 III-70〉 시군 주최 행사나 축제 참여 경험

	변인	빈도(명)	백분율(%)
시군 주최 행사나 축제 참여 경험	있다	37	22.0
	없다	117	69.6
	무응답	14	8.3
계		168	100.0

〈표 III-71〉 주민센터 제공 문화체육활동 참여 여부

	변인	빈도(명)	백분율(%)
주민센터제공 문화체육활동 참여	있다	33	19.6
	없다	122	72.6
	무응답	13	7.7
계		168	100.0

〈표 III-72〉 세계인의 날 행사 참여 경험

	변인	빈도(명)	백분율(%)
세계인의 날 행사 참여 경험	있다	32	19.0
	없다	93	55.4
	무응답	43	25.6
계		168	100.0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_Ⅳ

시사점과 정책 제언

1.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일반적 특징

- 본 조사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단기 순환 및 정주화 방지(가족 결합 금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체류의 장기화 및 가족 형성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함.
- 본 조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특정 국가 출신자 사이에서 불법적인 혹은 제도외적인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을 것이라는 통념은 지지되기 어렵다는 점이 밝혀짐.
- 외국인 근로자 가족 형성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의 내부에서 다양한 유형과 방식, 경로를 통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현행 법제가 외국인 근로자 가족 형성의 모든 경로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으리라는 점에서 향후 더욱 빠른 속도의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규모 증대가 전망됨.
- 본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고용, 의료, 자녀 양육, 주거 생활, 사회 문화활동 등에 있어서 제도적, 사회적, 심리적 제 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 특히 비정규(미등록) 체류자 가족 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나고 자란 ‘실질적인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임.
-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주객관적인 사회통합의 정도가 매우 높은 외국인 집단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현행과 같이 공적인 정책 지형에서 거의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외국인 정책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임. 같은 ‘가족’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다문화 ‘가족’(특히 다문화 가족 아동)과의 처우의 불평등성으로 인한 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지역 사회와의 실질적인 통합도 및 친밀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정책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사회 통합’이라는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핵심 가치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시될 수 있게 됨.
- 이런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정확한 생활 및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공적인 지원 체계 내부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모색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과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최초로 공론화하였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의미가 찾아질 수 있음.
- 이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화하고 제도적 포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기도는 가족 중심의 외국인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견지하면서도 그 지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정책의 안정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추구하는 데에 있어 국내외의 모본이 되는 외국인 정책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고용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문제는 고용허가제의 정책 목표 자체가 현실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임. 따라서 현실과 괴리된 고용허가제의 기조 자체를 재조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나 그 문제는 지자체 단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 중범위적이며 기술적인 정책 제언들을 제시해보기로 함.
- 일반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경우 고용허가제 근로자보다 평균임금수준이 높으나 임금체불 경험도 높음. 그것은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임금체불을 보장하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있기 때문임.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체류 자격에 구분 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직업 훈련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함: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장기 체류자이자 한국 문화에 숙달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숙련 직종에 근무함으로써 취업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함. 그러나 본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취업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은 극소수에 불과함. 중앙 정부 곧 고용노동부 차원의 취업 교육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자나 산재근로자로 교육 대상이 제한됨.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수원시 등 12개시, 민간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약 1,600여 명, PC정비, 운전면허, 용접 등 전문기술교육과정과 경제교육, 의식교육 실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나아가 그들의 취업 교육 수요 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미등록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불법 직업 알선 및 수수료 편취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에서 제공하는 직업소개(알선)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어야 함.

3. 의료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가 공적인 의료 지원 체제로부터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임. 이로 인해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동시적으로 요망됨. 응급 의료를 포함해 공적인 의료 지원 대상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함.
- 이와 관련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지원 범위를 확대시켜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을 조례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임신, 출산 시 지원 필요: 한국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이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됨. 여성 외국인 근로자가 임신 상태에서 출산과 양육비 마련을 위해 과로함으로써 신생아 질환을 동반한 미숙아를 조산하는 경우들이 발생함.
- 영유아 대상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는 체류자격과 관계 없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일본같이 외국인에게 보수적인 국가에서 조차 체류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영유아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정병호 외 2011). 본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이주아동·청소년의 30%가량은 기본적인 예방 접종 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12).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외국인 적용 범위 및 적용 사례 확대 필요: 현재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한 외국인은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③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 2)으로 제한됨.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10년의 경우 전체 긴급지원 45,278건 중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98건으로 총 지원건수 대비 0.2%, 전체 지원금의 0.3% 불과했음, 그 가운데 63.3%는 의료비 지원이었음.
-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보건 서비스 접근권 제고를 위해, 119 서비스 등 긴급 서비스 종사자들이 통보 의무 유예 대상자라는 점, 모든 12세 이하 아동들에게는 미등록, 등록 여부를 묻지 않고 무료 예방 접종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 등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어야 함.

- 언어소통으로 인한 불편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특히 공공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미등록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함, 모국어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이 중요함.
- 민간무료진료관련기관 연계방안 마련: 국내 거주 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기관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정부지원 가능 병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구비서류 미흡 등의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으로 이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원 연계망 구축이 요청됨 .

4. 자녀 양육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긴박하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서 찾아짐.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아동 권리 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은 아동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세계의 모든 아동이 자국민의 자녀와 동일한 기본권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본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한국인 아동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아동들에 비해서도 매우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보육 지원 필요: 외국인 근로자 부모가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고 싶어도 기본보육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 등 경제적 부분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일반 어린이 집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미등록 아동의 경우 보육통합시스템 등록절차의 번거로움 이외에 본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보육 조례'의 대상 범위를 외국인 근로자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외국인 영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육: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본국에서 영유아기에 한국으로 중도입국한 경우는 물론 한국에서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부모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따라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할 수 있음.
- 외국인 아동의 취학절차 안내 경로 발굴과 확대: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달리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학통지서를 받을 수 없어 취학절차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자력으로 얻어야 함. 이를 외국인 아동의 공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아동의 취학절차와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경로를 발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국가별 인터넷 커뮤니티, 민간단체, 외국인 밀집상가 홍보 등).
- 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를 위한 외국인 아동 등록제도 개선 필요: 정보의 부족이나 신분 노출 위협 등으로 인해 시기를 놓쳐 미등록이나 무국적 상태에 빠지는 외국인 아동이 존재함,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등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5. 주거생활

- 본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주거 시설은 매우 열악하며, 특히 비정규 체류자의 경우는 전세 형태를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장애들로 인하여 주거 비용의 문제가 더해져 상황이 더욱 심각함,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모색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주거 취약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주목할 점은 경기도에 다양한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 존재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조차 않는다는 점임. 그러나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가족화 경향이 강화되는 한국에서 출생하는 자녀들의 규모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주거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포용하는 문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판단됨. 이와 관련 현재 준비중인 '2020 경기도 주택 종합 계획'에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주거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안에 외국인 주거 지원 항목을 보완하는 방안 등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더불어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주택조례'의 대상 범위를 외국인 근로자 가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거비 지원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포함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비정규 체류자도 여권 번호 등 다른 방식으로 전세 계약이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강제 퇴거시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

6. 사회문화활동

- 단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주관적인 지역 사회 소속감과 객관적인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 사회 문화 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은 ‘경기도 문화예술 교육 진흥조례’,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등의 대상 범위를 외국인 근로자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임.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문화 시설에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함. 정보의 공유와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공공 시설 및 지역 사회 공론장에서 모국어 지원 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 평생 학습-e러닝 홈런(Home learn)’ 사이트의 경우 외국인 회원일 경우 ‘외국인 등록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 미등록 외국인의 접근권은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이런 경우 회원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비정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좀 더 적극적인 지역사회 문화 활동 참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임.

참고 문헌

- 군포 아시아의 창 외. 2012.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김광기 외. 2011.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산업 모델 개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김현숙. 2011. 부산의 다문화 공간과 외국 이주민의 삶과 정체성. 부산발전연구원
- 박재규. 2012.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실태 및 증진방안.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사회통합위원회. 2012.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종합평가와 대안
- 심영희 외. 2010. 인권친화적인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양기호 외.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과 시민사회단체간 거버넌스 실태모니터링
- 오경석 외. 2012.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오경석 외. 2011. ‘외국인 집거 지역’의 다문화 사회 인프라 구축 방안. 경기도의회
- 이혜원 외.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정기선 외. 2010.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IOM이민정책연구원
- 정병호 외. 2011. 이주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최혜지 외. 2012.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지

외노가족						
설문유형	고유번호	월	일	일련번호		

경기도 거주 외국인노동자가족인권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인권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본 설문의 응답 및 분석 결과는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을 완성하는데 약 30분 정도 걸리고 설문을 완성하시면 센터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삶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 6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오경석

☎ 031)492-9347, e-mail: gmhr@gmhr.or.kr

1. 고용 관련

1.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 | | |
|-------------|------------|--------------|
| ① 공장에서 일한다 | ② 식당에서 일한다 | ③ 장사한다 |
| ④ 사무실에서 일한다 | ⑤ 농사일을 한다 | ⑥ 가사도우미로 일한다 |
| ⑧ 기타_____ | | |

2. 귀하 가족의 한 달 총 수입은 얼마 입니까?

남편:	_____	만 원
부인:	_____	만 원
합계:	_____	만 원

3.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 ↓ | |

3.1 최근 1년간 몇 번 임금체불을 당하셨습니까?

- | | | | | |
|------|------|------|------|---------|
|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 ④ 4회 | ⑤ 5회 이상 |
|------|------|------|------|---------|

↓

3.2 임금체불을 해결하는데 평균 얼마나 걸렸습니까?

- | | | | | | |
|--------|--------|--------|--------|---------|-------|
| ① 1~2달 | ② 2~3달 | ③ 3~4달 | ④ 5~6달 | ⑤ 6달 이상 | ⑥ 못받음 |
|--------|--------|--------|--------|---------|-------|

4. 귀하께서는 시·군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훈련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까?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

5. 귀하께서는 시·군에서 제공하는 직업소개(알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

2. 의료 관련

6. 당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

7. 귀하의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총 의료비용은 얼마 입니까? _____ 원

8. 국민건강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9. 병원에 갈 돈이 없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 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② 모국 친구 ③ 한국인 친구
④ 외국인지원단체 ⑤ 지자체 ⑥ 기타 _____

10. 귀하의 가족은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아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1. 귀하의 가족은 시·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접종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2. 귀하의 가족은 정부나 지자체의 제공하는 건강 상담을 받아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3. 귀하의 가족 중 건강관련 응급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4. 한국사회는 응급상황 발생시 119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이 응급상황 시 119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4.1 만일 이용을 안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 ①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②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③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할 것 같아서 ④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⑤ 기타 _____

15. 귀하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무엇 입니까?

- ①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및 상담 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③ 건강 검진 ④ 의료비 할인
⑤ 모국어로 된 건강관련 책자 ⑥ 기타 _____

3. 자녀교육 관련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에만 16, 17, 18번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이미 학교에 다닐 경우 19번부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17, 18 번은 귀하의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만 응답

16. 현재 귀하의 자녀는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6.1 어린이 집에 다니지 못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 ① 돈이 없어서 ②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③ 입학 정보가 없어서 ④ 교통편이 없어서 ⑤ 기타_____

17. 귀하의 자녀는 시·군의 보육료를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8. 귀하의 자녀는 시·군에서 제공하는 자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18번 응답이 끝난 분은 26번부터 응답해 주세요.

19. 귀하의 자녀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9.1 귀하의 자녀가 학교를 안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돈이 없어서 ② 입학 절차를 몰라서 ③ 자녀가 한국말을 못해서
④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⑤ 자녀가 따돌림을 당할까봐 ⑥ 기타_____

20. 귀하의 자녀는 입학 시 교육청이나 주민 센터로 부터 입학안내에 관한 서비스를 받아 보신 적
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1. 귀하의 자녀가 시·군에서 제공하는 자녀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2. 귀하의 자녀를 학교에 입학 시킬 때 학교 측의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3.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다문화 전담 교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3.1 귀하의 자녀는 학교에서 다문화전담 교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4. 귀하의 자녀는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5. 귀하의 자녀는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학습멘토링 사업’은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기초학력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6. 귀하의 자녀는 시·군이 제공하는 어린이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7. 귀하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어 교육 ② 학교 과목 과외지도 ③ 심리상담
④ 진학지도 ⑤ 학교 교육비, 급식비 등 경제적 지원
⑥ 사교육 ⑦ 기타 _____

4. 주거·생활관련

28. 귀하의 가정은 1달 생활비를 얼마 사용하고 계십니까? _____ 원

29. 귀하는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린 경험이 있습니까?



29.1 만일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면 누구에게 빌렸습니까?

30. 귀하의 생활비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어디 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식료품비 ② 의료비 ③ 자녀교육비
④ 문화생활(영화, 노래방 등) ⑤ 의류비 ⑥ 관리비(가스, 전기 요금 등)
⑧ 기타

31.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 입니까?

- | | | | |
|--------|---------|-------|----------|
| ① 컨테이너 | ② 비닐하우스 | ③ 판자집 | ④ 지하·반지하 |
| ⑤ 단독주택 | ⑥ 연립 | ⑦ 아파트 | |
| ⑧ 고시원 | ⑨ 기타 | | |

32. 귀하의 주택 점유 형태는

- ① 무상 ② 월세 ③ 전세 ④ 자기집 ⑤ 기타



32 | 월세의 경우 매월 내는 금액 월

33. 귀하가 거주하는 곳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온수가 잘 안나온다 | ②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 ③ 외풍이 심하다 |
| ④ 쥐, 바퀴벌레 등 이 있다 | ⑤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많다 | ⑥ 물이 샌다 |
| ⑦ 화재나 붕괴의 위험 | ⑧ 기타 _____ | |

※ 다음은 시·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34. 시·군이 제공하는 생활지원관련 사회복지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35. 시·군이 제공하는 생활·법률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36. 시·군이 제공하는 한국어교육에 참여하신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37. 시·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 서비스나 원격교육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38. 시·군에서 제공하는 통·번역 서비스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5. 사회·문화 활동 참여

39. 귀하께서는 귀하가 살고 있는 동네의 구성원이라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0. 귀하께서는 시·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예) 배 축제, 국악축제, 고양 꽃 축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등

41. 귀하께서는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2. 경기도가 매년 5월 20일에 주최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일반적 배경

1.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_____년

2.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3.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 시기는 비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입국년도	비자유형
본인		
배우자		

4.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 ① 중국 ② 베트남 ③ 캄보디아 ④ 일본 ⑤ 필리핀 ⑥ 태국
⑦ 몽골 ⑧ 우즈베키스탄 ⑨ 기타 _____

5. 결혼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기혼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강제단속 추방 포함)
⑤ 기타 _____

6. 자녀의 수는 몇 명 입니까? _____명

7. 현재 귀하는 현재 어떤 비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등록() 미등록()



비자종류 ① E-9 ② H-2 ③ 기타 _____

8. 본인의 가족은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대상	방식	
본인	①정식비자(산업연수생,고용허가제) ③종교인의도움으로 ⑤ 기타 _____	②브로커를 통한 관광비자 ④이주민센터의 도움으로
배우자	①정식비자(산업연수생,고용허가제) ③종교인의도움으로 ⑤ 기타 _____	②브로커를 통한 관광비자 ④이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자녀 1	①브로커를 통한 관광비자 ③이주민센터의 도움으로 ⑥ 기타 _____	②종교인의도움으로 ⑤ 한국에서 출생
자녀 2	①브로커를 통한 관광비자 ③이주민센터의 도움으로 ⑥ 기타 _____	②종교인의도움으로 ⑤ 한국에서 출생
자녀 3	①브로커를 통한 관광비자 ③이주민센터의 도움으로 ⑥ 기타 _____	②종교인의도움으로 ⑤ 한국에서 출생

감사합니다_____



425-86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번 (초지동 667-2) 4층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425-866 Korea
전화. 031_492_9347 전송. 031_492_9349 누리집. www.gmhr.or.kr